

관세연구 23-01

# 주요국의 특송물품 통관제도 비교연구

2023. 9.

최인혁·노영예·박지우

## 연구진

### 연구책임자

최 인 혁 부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노 영 예 선임연구원

박 지 우 선임연구원

# 목 차

I. 서론 .....	1
II. 우리나라의 특송물품 통관절차 .....	4
1. 개요 .....	4
2. 소액 면세 .....	5
3. 특송물품의 통관절차 .....	8
가. 개요 .....	8
나. 특송물품의 일반통관 .....	11
다. 특송물품의 간이통관 .....	18
라. 특송물품의 목록통관 .....	20
4. WCO 신속반출지침 .....	23
III. 주요국의 특송물품 통관절차 .....	27
1. 미국 .....	27
가. 개요 .....	27
나. 소액면세 .....	34
다. 특송물품의 통관절차 .....	37
2. 일본 .....	50
가. 개요 .....	50
나. 소액면세 .....	53

다. 특송물품의 통관절차 .....	54
3. 호주 .....	62
가. 개요 .....	62
나. 소액면세 .....	67
다. 특송물품의 통관절차 .....	69
4. 필리핀 .....	78
가. 개요 .....	78
나. 소액면세 .....	82
다. 특송물품의 통관절차 .....	83
5. 인도네시아 .....	90
가. 개요 .....	90
나. 소액면세 .....	97
다. 특송물품의 통관절차 .....	98
IV. 국제비교 및 요약 .....	105
참고문헌 .....	107

## 표 목차

〈표 II-1〉 특송물품 신고유형 .....	9
〈표 II-2〉 일반수입통관절차 .....	14
〈표 II-3〉 간이세율 .....	17
〈표 III-1〉 미국 특송물품에 관한 법령 .....	32
〈표 III-2〉 Section 321 및 Entry Type 86 비교 .....	42
〈표 III-3〉 수입신고 유형 .....	44
〈표 III-4〉 일본관세국 조직 및 업무 .....	51
〈표 III-5〉 간이세율 적용 품목 .....	59
〈표 III-6〉 수입신고의 종류 및 내용 .....	69
〈표 III-7〉 조건별 탁송화물 수입세율 .....	98

## 그림 목차

[그림 II-1] 특송물품 검사에 따른 수입절차도 .....	11
[그림 III-1] 미국 CBP조직도 .....	30
[그림 III-2] Entry Type 86 통관절차도 .....	43
[그림 III-3] 개인물품 특송 수입 절차도 .....	58
[그림 III-4] ABF조직도 .....	63
[그림 III-5] 호주의 수입신고절차 .....	72
[그림 III-6] 필리핀 관세청 조직도 .....	80
[그림 III-7]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 총국 조직도 .....	94

# I. 서론

- 인터넷의 발달과 및 항공수단의 발달로 다품종의 소량화물인 특송물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과거 특송물품은 서류, 카탈로그, 샘플, 해외 친척(거래회사)이 기증한 물품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해외에서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반입하는 물품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sup>1)</sup>
  - 특송물품은 일반적으로 특송업체가 운송하는 물품으로써 국제적으로 통일된 용어는 없어 Air express, Courier Express 등으로 사용 중에 있음
  
- 우리나라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하는 해외직구물품의 경우 국제운송과 국내배송의 신속성 및 특송화물에 대한 통관절차의 편리성으로 인해 당해 물품의 대부분을<sup>2)</sup> 특송업체가 운송하여 반입하고 있음
  - 해외직구 금액의 범위는 대체로 소액이므로 항공운송을 이용하여 특송물품 형태로 수입될 가능성이 높음<sup>3)</sup>
  
- 우리나라는 특송 물품에 대해 금액에 따라 일반수입 통관제도와 국제협약 및 관세법에 따라 물품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간소한 통관절차를 적용하고 있음
  - 특송화물은 물품의 가격, 자가 사용 여부 및 통관제한 여부 등 화물 특성에 따라

1) 관세청, <https://www.customs.go.kr/seoul/cm/cntnts/cntntsView.do?mi=3709&cntntsId=819>, 검색일자: 2023. 8. 21.

2) 김종덕·김울성, 「해외직구물품 급증에 따른 통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해사법연구』, 제31권 제1호, 2019, p. 16.

3) 총 구매 금액 20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이 전체의 약 97%를 차지하고 있음. 『세정일보』, 「'해외 직구', 2014년 포다시 사상 최대 규모...1,553만 건」, 2015. 1. 23.,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8>, 검색일자: 2023. 8. 21.

목록통관·간이통관 및 일반통관으로 통관방법을 구분하고 있음

- 2022년 기준으로 전자상거래물품은 목록통관 비중이 67%, EDI 수입신고(간이신고 및 일반수입신고) 비중이 33%임<sup>4)</sup>
- 특히 최근 전자상거래 또는 디지털통상(digital trade)이 국제무역의 새로운 유형으로 빠르게 자리 잡으면서 통관행정의 간소화 및 신속화가 주요 화두로 부각되고 있어 특송화물의 통관과 관련된 제도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따라 특히 관세·통관행정 분야의 통상협정에 자동화·원활화, 간소화된 통관 절차, 투명성 등 특송 화물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오고 있음
- 다만 국가별 경제 상황 차이 및 문화에 따른 내국법의 차이로 인한 각기 다른 특송물품 면세 기준으로 단순 비교를 통해 개선방안 및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함
-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제도의 보완 또는 개선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의 특송물품 관련 제도를 파악하여 향후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목적을 가짐
  - 특송물품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미국, 호주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와 제도 유사한 일본을 주요국으로 선정하여 조사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2023년 기준으로 각국의 특송 화물 통관제도에 대한 최신 내용을 다루고자 하였으며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개발도상국 중 특송 화물 통관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필리핀 및 인도네시아의 제도 또한 조사하였음
  - 정재호 외 2인(2012)에서는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통관제도를 조사하였으며 실무상 밀수 방지를 위한 인원확충, 특송업체 및 시설이용 승인제 도입, 우편과 특송의 간이 신고 기준 일원화, 근거법령 정비 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4)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7](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7), 검색일자: 2023. 8. 22.

- 송선욱(2004)에서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송화물 통관제도를 비교하고 효과적인 특송물품 수입통관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으로 관세법 정비, 목록통관특송물품의 경우 가격정보가 담긴 서류를 세관에 전소하도록 하고 물품 검사 요원의 전문성 확보 등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였음
  - 김충호(2017)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식 개선, 통관목록 기재 항목에 사업자등록번호 추가,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에 대한 통관 강화 특송물품에 대한 마약탐지견 활용 강화, 자가소비용으로 면세통관 후 반품되는 특송물품의 관리방안 마련 특송물품 국내배송지 상이내역 제출대상 확대 등을 통한 특송물품 통관제도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음
- 본 연구는 제 I 장 서론을 포함하여 총 IV 장으로 구성되었음
- 제 II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특송물품 통관절차 및 소액면세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였으며 개정교토협약의 보완적 성격을 가진 세계관세기구의 즉시반출가이드라인에 대해 개괄적인 내용을 서술하였음
  - 제 III 장에서는 주요국(미국, 일본, 호주)의 특송물품 통관절차를 비롯하여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같이 특송화물 통관 제도가 발전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제도 또한 조사하였음
    - 각국의 특송화물 통관제도를 신고금액에 따라 일반 통관제도, 간이 통관제도로 분류하여 조사하였으며 간이통관이 적용되는 소액면세 기준, 배제대상 등에 대해서 서술하였음
  - 제 IV 장에서는 제 II 장과 제 III 장에서 살펴본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제도에 대해 비교하였음

## II. 우리나라의 특송물품 통관절차

### 1. 개요

- 우리나라는 관세청에서 특송물품과 관련한 통관 및 처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통관국에서 수입 및 중계무역물품의 통관, 관세 감면, 분할납부 등 대상 물품의 통관, 수출입물품의 요건 확인 등을 담당하고 있음
  - 이 밖에 심사국에서 관세 및 수입 관련 내국세의 부과·징수, 세수 및 세외수입의 관리, 덤핑심사, 원산지표시단속 등 위반행위 조사, 납기연장·분할납부 등에 대해 담당하고 있음
  
- 특송물품에 대해 「관세법」 제2조(정의), 제222조, 제254조 및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예에 관한 고시」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특송화물 중 일반 통관 절차를 거치는 경우 「관세법」 및 「수입통관 사무처리예에 관한 고시」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1982년 4월 국내도매가격 3만원 이하 특송품에 대해 「간이통관요령」을 규정한 것이 특송물품 통관제도의 시초라고 볼 수 있음<sup>5)</sup>
  - 1993년 11월 「간이통관요령」을 개정하여 간이통관대상을 CIF 기준 200달러 (USD, 이하 달러로 표기) 이하로 규정하였으며 1997년 5월 특송물품 통관유형을 현재와 같이 목록통관, 간이통관, 일반 수입 통관으로 세분화하였음

---

5) 김충호, 「특송물품 통관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8권 제1호, 2017. 2. 28., pp. 5~6.

- 2000년 12월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절차를 관세법 개정을 통해 신설하였으며, 수입신고가 생략 가능한 탁송품의 구체적 기준을 고시에 위임되도록 관세법 시행령에 명시하였음
  - 2003년에는 특송통관에 관한 사항을 수입통관 고시에서 분리하여 「특송화물 고시」를 별도 제정하였음
  - 2004년 3월 목록통관 기준을 60달러에서 100달러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2008년 12월 탁송품의 특별통관절차가 「관세법」 별도 조항으로 구체화되었고, 2014년 1월 탁송품 배송지 제출 의무화 조항이 신설되었음
-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해외직구 급증 등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리처리에 관한 고시」에 전자상거래 물품 관련 용어 정의를 신설(제2조) 하였음
  - 2023년 7월 1일부터 「관세법」에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전자상거래물품 전용 통관절차 운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탁송품<sup>6)</sup>의 경우에도 전자상거래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수출입통관 및 검사제도 등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음

## 2. 소액 면세

- 소액물품 등의 면세는 특정 목적에 따라 과세 특례를 부여하는 관세 감면제도의 하나로 「관세법」에서 정한 용도 및 금액의 기준에 따라 특정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음
-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비롯하여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가 부과되며 소액물품은 「관세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고 「부가세법」에 따라 관세가

---

6) 「관세법」상에서 특송물품에 대해 탁송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해당 법령에 대한 설명에 한정하여 탁송품이라고 칭함

면제되는 일부 재화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함

-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상업용 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 등이 적용대상임
- 소액물품 등의 면세의 취지는 국제친선 도모 및 무역원활화를 비롯하여 통관절차 간소화 또한 관련이 있음<sup>7)</sup>
  - 1999년 관세법에서 기증 요건을 제외하고 소액을 이유로 면세가 가능하도록 하면서 통관절차 간소화를 고려하였음
  - 교도협약에서는 국내법이 소매가격에 기초해 정한 총액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개인 선물용품에 대한 관세 및 제세금의 면제(알코올 등과 담배제품 제외)를 규정하고 있음<sup>8)</sup>
  -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필요성에 대해 해외여행의 확대, 문화교류의 증진, 근로자의 국제적 이동 및 다른 관세영역에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간의 긴밀한 유대관계 형성을 통해 국제적 이해 및 친목 도모하는 것이 세관의 이익에 부합됨
- 우리나라의 자가 사용 소액물품의 면세기준은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써 자가 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한약재 등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1조 별표 17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함
  - 단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써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함
  - 물품가격(「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써 자가 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7) 정재완, 「인터넷으로 구매한 소액 물품 등의 면세」, 『관세와 무역』, 2006년 4월호.

8) 개정교도협약 특별부속서 B 제3장 7(e) 및 동 협약의 이행지침 제3장 부록 2(e)

- 기타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 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 관람자 1인당 제공량의 정상도착가격이 5달러 상당액 이하의 것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함
- 특송물품의 경우 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 되며, 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 사용물품으로써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됨<sup>9)</sup>
  - 다만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은 과세되며 물품가격이 150달러 초과하는 경우 총 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됨
- 그 밖에 국내거주자가 특급택송을 통해 수입한 물품이 동일날짜에 여러 개의 화물로도 도착했을 시 다음의 경우 합산과세 됨<sup>10)</sup>
  -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irway bill, 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 수입 통관하는 경우
  -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 합산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150달러, 미국은 200달러)을 초과하면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정식 수입신고 대상이 됨
  - 합산과세 되는 경우 총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됨
    - 특송물품으로 반입된 경우 150달러가 초과되어 목록통관을 배제하고 일반수입 신고를 하는 물품은 수입신고서 세관기재란에 합산과세의 근거가 되는 B/L번호와 합산과세임을 표기하고, 합산과세 대상이 된 B/L을 수입신고서에 첨부해야 함

9) 관세청, <https://www2.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 검색일자: 2023. 8. 7.

10) 관세청, <https://www2.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7&cntntsId=2807>, 검색일자: 2023. 8. 7. 및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

### 3. 특송물품의 통관절차

#### 가. 개요

##### 1) 신고유형

- 특송물품은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제2호에 따라 특송 업체가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으로 정의함
  - 특송 업체는 국제무역선·국제 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상업서류나 그 밖의 견본품 등을 송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물품을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sup>11)</sup>로써 특송품 운송업자라고 불리기도 함
  - 특송 업체는 자본금 3억원 이상의 법인으로서 상업서류송달업의 신고를 필했거나 (외국무 역기를 이용하는 업체)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을 필한 자(외국무역기 또는 외국무역선을 이용하는 업체)로써 세관에 등록되어야 함
  
- 특송물품의 신고유형은 크게 3가지로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가격을 기준으로 목록통관, 간이수입신고, 일반수입신고로 구분할 수 있음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과 별표 2의 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목록통관 또는 간이신고를 배제하고 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해야 함

---

11) 「관세법」 제2조 제17항 및 제222조 제6항

〈표 II-1〉 특송물품 신고유형

	목록통관	간이수입신고	일반수입신고
구분	-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 (단, 미국은 200달러 이하) - 자가용품 - 요건확인 대상 물품 제외	- 물품가격 150달러 초과 2,000달러 이하 (단, 미국은 200달러 초과) - 자가용품 - 요건확인 대상 물품 제외	- 물품가격 미화 2,000달러 초과 - 요건확인 대상 물품
신고인	특송 업체	화주 또는 관세사	화주 또는 관세사
제출서류	없음	없음	가격자료, 원산지증명서 등
통관방법	- 특송 업체의 통관목록 제출 - 수입신고 생략 및 관세 면제	- 수입자가 유니패스 등을 사용 신고서 항목 일부가 생략된 간이수입신고 - 검사 생략	- 수취인이 요건확인 서류 제출 및 수입신고 - 관세 납부 및 수입신고 수 리 후 물품 반출

자료: 김충호, 「특송물품 통관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8권 제1호, 2017. 2. 28., pp. 5~6 및 법령 확인 후 재작성.

## 2) 특송물품의 검사

- 세관장은 다음의 경우 해당 특송 업체 또는 항공편·선박의 반입 화물에 대해 사전에 정보 분석을 통해 검사를 지정할 수 있음<sup>12)</sup>
  - 마약·테러 등 정보·첩보가 있는 경우
  - 특송업체, 물품발송인, 물품수신인, 출발지, 그 밖의 정보 등을 고려하여 반입 화물의 우범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사전 정보 분석 결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화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화물 투입구를 이용하도록 조치할 수 있음
  - 세관장은 전산에서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목록통관 대상 특송물품이 물품발송인, 품명, 규격, 발송국, 전자상거래 사이트 주소 등이 동일하여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물품 등으로서 우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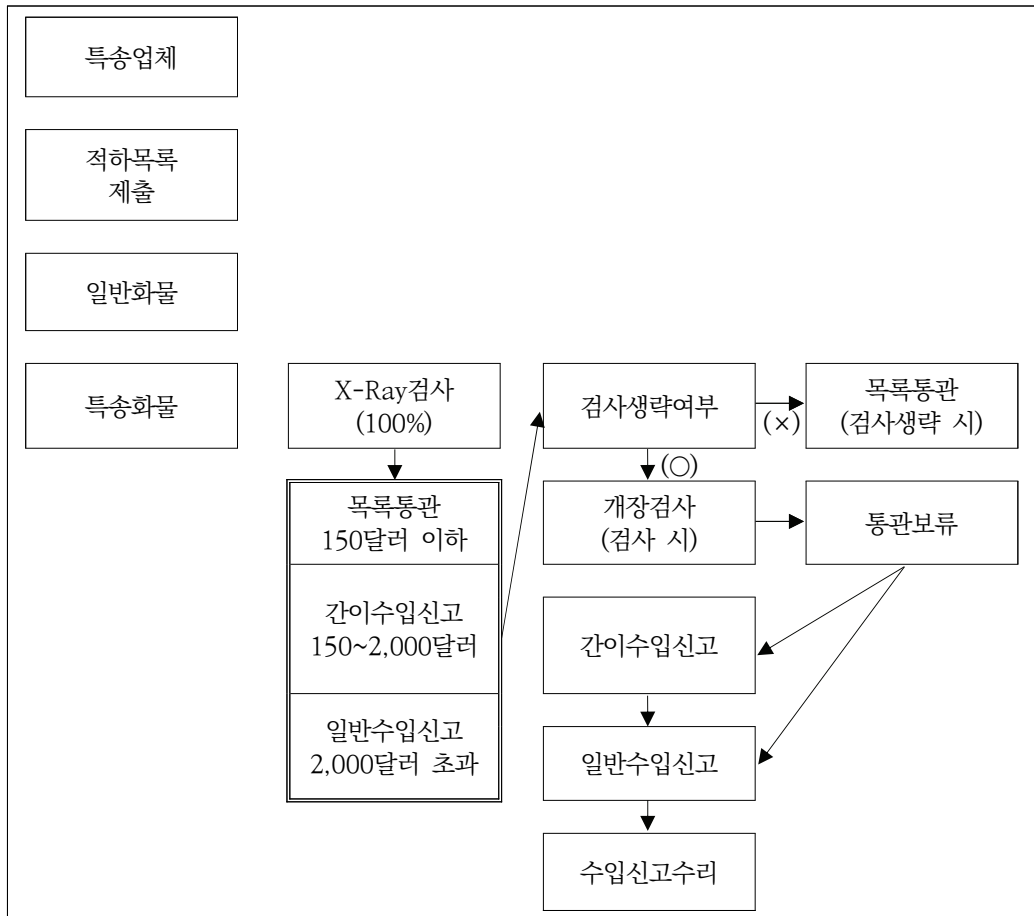
12)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의 2

- 특송물품은 일반수입신고, 간이수입신고, 목록통관 모두 X-Ray 검사가 이루어지며 목록통관은 검사가 생략되고 간이 수입신고 및 일반 수입신고의 경우 개장검사가 이루어짐
- 특송물품은 세관장이 따로 지정한 세관 지정 장치장에 반입하여 세관공무원의 X-Ray 검색기 검사 등을 거친 후 통관해야 함<sup>13)</sup>
  - 세관장은 특송물품을 컬러로 정확히 판독할 수 있는 양방향 X-Ray 검색기 및 실시간 X-Ray 정밀판독시스템, 자동분류기 등의 검색 및 검사시설을 구비하는 등 특송물품을 반입하여 통관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한하여 제1항의 세관 지정 장치장으로 지정할 수 있음
  - 특송업체가 본사·지사 또는 대리점 관계 등을 통하여 직접 물품발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수집하지 않고 다른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수집한 물품을 반입하여 통관하고자 할 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에 따른 통관목록 제출 또는 수입신고 시 해당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부호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함
  - 해당 물품을 취급하는 특송업체는 법규를 위반하거나 물품발송인·물품수신인, 품명, 가격 등 물품정보와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3조에 따른 배송지 정보를 불성실하게 제공하는 화물 운송 주선업자에 대하여 제재, 거래중지 등 적절한 관리 및 통제절차를 마련해야 함

---

13)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

[그림 II-1] 특송물품 검사에 따른 수입절차도



자료: 관세청,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 검색일자: 2023. 8. 2.

## 나. 특송물품의 일반통관

### 1) 수입 신고 및 신고 수리

- 물품가격이 2,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일반 수입신고 특송물품)은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해야 함

- 일반 수입신고 특송물품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수입통관고시)에 따른 일반통관절차를 적용함
- 특송 물품의 일반 수입신고 절차는 수입신고, 신고서처리, 납부, 신고수리, 물품반출의 절차로 이루어짐
  -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함
- 수입신고는 관세사, 자가 통관 업체(화주)에 따라 이루어지고 물품이 항구(공항)에 도착한 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속 통관을 위해 도착 전이라도 신고가 가능함
- 수입신고는 전산시스템으로 전자이미지로 전송하는 전자신고 P/L(Paperless)을 원칙으로 하며 세관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송품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ill of landing),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검사(검역증) 등을 제출해야 함
  - 출항 전 신고나 입항 전 신고는 해당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 전(항공기에 의한 경우에는 1일 전)부터 가능함
- 검사는 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 신고 건에서 선별하여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검사비용은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sup>14)</sup>
  - 검사는 전량검사, 발취검사, 분석검사, 과학 장비에 의한 검사 등으로 이루어지며 적발물품은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등이 이루어짐
- 수입검사 및 서류심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를 수리하며 다음의 경우 보완이 요

14) 관세청,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 검색일자: 2023. 8. 1.

구하거나 통관을 보류할 수 있음<sup>15)</sup>

- 신고서 항목의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 첨부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P/L신고를 서류제출신고로 변경하려는 경우 보완이 요구됨
- 「관세법」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세법」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세법」 제246조의3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30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관세법」 제230조의2에 따른 품질 등의 허위·오인표시물품, 기타 통관 심사결과 신고수리의 요건을 구비하는데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통관이 보류됨

- 신고가 수리되면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며 세금이 납부된 후 수입신고필증이 발행됨<sup>16)</sup>
  - 수입신고수리사실을 확인 후 보세창고에서 물품이 반출되나 원자재 등 긴급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는 물품은 수리 전에도 반출 허용신고가 수리되면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음

- 세관장은 일반 수입 신고 특송 물품에 대하여 「수입통관고시」 제35조에 따라 수리하나 입항 전 수입신고, 출항 전 수입신고, 도착 전 수입신고 특송 물품에 대하여는 X-ray 검사 후 수리할 수 있음

- 스마트 통관은 일반 수입신고 특송 물품 중 「관세법」 제12조의4 제2항에 따라 주문·결제 등에 있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공급망이 관여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 우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개인 전자상거래물품에 적용됨<sup>17)</sup>

15) 관세청,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 검색일자: 2023. 8. 1.

16) 관세청,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 검색일자: 2023. 8. 1.

17)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의 2

- 「관세법」 제12조의4 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개인 전자상거래물품의 주문·결제 등 거래정보를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 통신판매자로부터 전자적인 방식으로 제공받아 전자상거래물품의 효율적인 감시·단속과 신속한 통관지원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음
- 수입신고 전에 대해서 신고내용이 통관시스템에 접수된 후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전자적 방식으로 심사 및 수리됨
- 세관장은 스마트통관 수입신고라 할지라도 신고수리 전 신고내용을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검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검사대상으로 선별할 수 있음

〈표 II-2〉 일반수입통관절차

절차	내용
물품반입 (장치장)	- 외국으로부터 물품 도착 후 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함
요건구비 (수입화주)	- 수입화주는 요건확인·세율 추천·감면추천서를 수입 신고 전에 구비해야 함 - 전산망 연계기관의 경우에는 요건확인·세율 추천·감면추천서를 전자문서로 신청 및 제출 가능함
수입신고 (신고인)	- 신고인은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통관시스템에 전송함 - 통관시스템은 검사대상 및 서류제출 대상을 선별 후 신고인에게 접수 통보함
신고서처리 (세관)	- 검사 건은 현품확인 후 서류에 의해 통관심사를 함 서류 제출 건은 서류에 의해 통관 심사를 함 P/L(Paperless) 건은 화면에 의해 통관심사를 함 심사결과 이상 없는 건은 결제 등록함
담보제공 또는 사전납부	- 수입화주는 물품을 인도받기 위해 세관에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세금을 사전에 납부해야 함
신고수리	- 세금이 수납되었거나(사전납부) 담보가 설정된 경우(사후납부)에는 통관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신고수리가 됨
물품반출	- 수입화주는 보세구역(장치장소) 운영인에게 물품반출 요청하여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함
사후납부 (수입화주)	- 수입화주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함

자료: 관세청,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lD=817>, 검색일자: 2023. 8. 2.

## 2) 납세신고 및 납부

- 부과지 대상 물품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수입신고 대상물품의 경우 신고 수리 후 납부가 원칙임
  - 수입신고 시 납세신고를 해야 하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세금을 납부해야 함<sup>18)</sup>
  - 부과지<sup>19)</sup>의 경우 납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세가 이루어져야 함
- 예외적으로 납세편의, 금융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월별납부를 허가하고 있으며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음<sup>20)</sup>
  - 해당 제도 이용 시 최장 45일 정도의 납기 연장이 가능함<sup>21)</sup>
  - 납부세액을 일괄하여 납부하게 되면 납부고지서 관리의 편의성과 금융기관 수납 횟수가 줄어드는 편리성이 증대되며 납부기한의 연장으로 연장되는 기간 동안 자금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만큼의 금융 이자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 수입업체의 경우 많은 부대비용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음<sup>22)</sup>
  -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음
  -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 일부터 그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함<sup>23)</sup>

18) 「관세법」 제9조 제1항

19) 관세청,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4&cntntsId=822>, 검색일자: 2023. 8. 8.

20) 「관세법」 제9조 제3항

21) 관세청,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4&cntntsId=822>, 검색일자: 2023. 8. 8.

22)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월별납부 제도 이용한 수입기업의 비용절감 노하우」, 2022. 10. 24., [http://m.taxnet.co.kr/tax/news/news\\_View.asp?num=1039830&curPage=835&pSize=10&strSearchWord=%C1%A6%B8%F1%C0%BB%20%C0%D4%B7%C2%C7%CF%BC%BC%BF%E4](http://m.taxnet.co.kr/tax/news/news_View.asp?num=1039830&curPage=835&pSize=10&strSearchWord=%C1%A6%B8%F1%C0%BB%20%C0%D4%B7%C2%C7%CF%BC%BC%BF%E4), 검색일자: 2023. 8. 8.

23)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5(월별납부)

-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할 때 월별납부를 허가함
  - 최근 2년간 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가산금을 제외한 총 체납세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되, 신청일 기준 위 체납된 세액을 납부 완료한 경우에 한함
  - 최근 3년간 수입실적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최근 2년)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의 경우 가능함
  
- 월별납부 업체 승인 시 납세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이 지난날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수입신고 건의 납부할 세액을 월말에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으므로 월별납부 고지서의 경우 월말일의 15일 전까지 수입신고 수리된 건이 포함되며 그다음 날 고지서가 발행됨<sup>24)</sup>
  - 또한 월말일의 경우 28일부터 31일까지 변경되기 때문에 매달 납부 대상 수입신고 건의 수리 기간이 달라지게 됨
  - 월별납부 업체 승인 시 추가 담보 제공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한도액은 전년도 제세 납부실적에 45/365의 금액으로 설정되며 중소기업의 경우 전년도 제세 납부실적의 60/365의 금액으로 설정됨
  - 다만 수입부문 안전관리 우수 공인 업체에 해당되는 경우 전년도 제세 납부실적만큼 월별납부 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음
  - 사업의 확장이나 국내 수요 증가 등 수입실적이 증가하여 한도액이 부족하게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최근 3월이나 전년도 분기 중 납세실적이 높은 분기에 4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도액 증액을 신청할 수 있음
  - 또한 최근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천재지변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유 발생 직전 연도 납세실적이 높은 분기의 4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도액

24)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월별납부 제도 이용한 수입기업의 비용절감 노하우」, 2022. 10. 24., [http://m.taxnet.co.kr/tax/news/news\\_View.asp?num=1039830&curPage=835&pSize=10&strSearchWord=%C1%A6%B8%F1%C0%BB%20%C0%D4%B7%C2%C7%CF%BC%BC%BF%E4](http://m.taxnet.co.kr/tax/news/news_View.asp?num=1039830&curPage=835&pSize=10&strSearchWord=%C1%A6%B8%F1%C0%BB%20%C0%D4%B7%C2%C7%CF%BC%BC%BF%E4), 검색일자: 2023. 8. 8.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한도액 조정 신청 서식이 신설되어 해당 서식으로 관할지 세관에 월별납부 한도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음
- 월별납부업체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월별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 징수 형태란에 월별납부대상 부호를 기재하여 납세신고를 해야 함<sup>25)</sup>
- 관할지 세관장은 월별납부 대상으로 납세 신고 된 물품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관세법」 제24조 제4항에 따른 포괄담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함<sup>26)</sup>
- 다만 월별납부업체가 담보제공 생략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지 세관장이 정하는 월별납부한도액 범위 내에서 담보제공을 생략하도록 할 수 있음

### 3) 간이세율

- 「관세법」 제81조에서는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우편물, 탁송품 또는 별송품 등에 대해 간이세율을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표 II-3〉 간이세율

(단위: %)

품명	간이세율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72만 1,200원+480만 8,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고급 시계, 고급가방	28만 8,450원+192만 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투전기, 오락용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수렵용 총포류	47
녹용	21

25)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26)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표 II-3〉의 계속

(단위: %)

품명	간이세율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특소세과세대상 제외)	19
모피목도리, 모자 등 기타 모피제품(특소세과세대상 제외)	19
가죽제의류 및 콤포지션레더제 의류	18
가죽제 및 콤포지션레더제장갑, 벨트 및 기타 부속품	18
직물류, 자수포 및 양탄자 등 바닥깔개류(도포직물 및 편물을 포함하며 특소세부과대상은 제외)	18
재킷, 바지, 코트, 셔츠, 수영복, 메리야스, 브래지어, 거들 등 모든 의류와 스타킹류	18
의류부속품 및 의류 또는 의류부속품의 부분품	18
모포, 타월, 린넨, 커튼 등 실내용품과 텐트, 보자기, 청소용포, 테이블보 세트 등	18
신발류	18
기타	15

자료: 인천공항본부세관, [https://www.customs.go.kr/incheon\\_airport/cm/cntnts/cntntsView.do?mi=12714&cntntsId=6920](https://www.customs.go.kr/incheon_airport/cm/cntnts/cntntsView.do?mi=12714&cntntsId=6920), 검색일자: 2023. 8. 28.

- 하위고시에서는 우편물의 경우에만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간이세율 적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간이세율의 적용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다. 특송물품의 간이통관

- 물품가격이 150달러<sup>27)</sup>(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200달러)를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간이신고 특송물품)은 간이 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음<sup>28)</sup>

27) 법에서 표현하는 화폐 표기를 준용하였음.

28)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

- 간이신고의 경우 첨부 서류 없이 인터넷·EDI 등을 이용하여 전자서류로 수입신고를 해야 함
  -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수입신고서에 송품장,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함<sup>29)</sup>
  
- 세관장은 간이신고 특송물품에 대하여 검사 및 심사가 종료한 후에 수리함<sup>30)</sup>
  
- 다음의 간이통관 배제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일반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함<sup>31)</sup>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에 해당하는 물품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6호, 제12호에 해당하는 물품
  - 할당·양허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중 세율추천이 필요한 물품
  - 「관세법」 제83조에 따른 용도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중 사후관리 대상물품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 「관세법」 제250조에 따라 신고취하 또는 신고각하된 후 다시 수입신고하는 물품 해체·절단 또는 손상·변질 등에 의해 물품의 성상이 변한 물품
  -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적용대상 물품
  -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여 세관장이 간이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 「관세법」 제240조의2에 따른 유통이력 신고대상 물품

29)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30)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2항

31) 「관세법」 제241조 제1항 및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2

## 라. 특송물품의 목록통관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 사용 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음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 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200달러 이하에 해당할 경우 수입신고 생략이 가능함
  - 통관목록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sup>32)</sup>
    - 물품의 발송인 및 수신인의 성명, 주소, 국가
    - 물품의 품명, 수량, 중량 및 가격
    - 특송품의 통관목록에 관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운송업자명, 선박편명 또는 항공편명, 선하증권 번호, 물품수신인의 통관고유부호,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sup>33)</sup>
    - 특송품 운송업자는 통관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해서는 안되며 통관목록에 적힌 물품수신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특송품을 배송하거나 배송하게 한 경우에는 배송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함
    - 세관장은 특송품 운송업자가 해당내용을 위반하거나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목록통관을 배제할 수 있음
-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 장치장에서 특송품을 통관해야 함<sup>34)</sup>
  - 다만 특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에서 통관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특송품 검사설비 기준, 설비이용 절차, 설비이용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함

32) 「관세법」 제254조의2

33) 「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

34) 「관세법」 제254조의2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음
  - 관세청장은 탁송품의 신속한 통관과 탁송품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단속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 간 협력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고시할 수 있음
-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 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음<sup>35)</sup>
-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해야 함
  -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 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음
  -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 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음
- 목록통관 특송 물품은 세관장의 검사 및 심사가 종료된 후에 통관함<sup>36)</sup>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이 검사하도록 하며 탁송품의 통관목록의 제출시한, 실제 배송지의 제출, 물품의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함<sup>37)</sup>

35)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의3

36)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1항

37) 「관세법」 제254조의2

- 목록통관의 경우 통관절차가 완료된 목록통관 특송 물품에 대하여 통관이 적법한지를 사후에 심사함<sup>38)</sup>
- 다음의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일반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함<sup>39)</sup>
  - 의약품
  - 한약재
  - 야생동물 관련 제품
  -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 건강기능식품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식품류·주류·담배류
  -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2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 제1호자 목에 해당하는 물품
  -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38)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4조

39) 「관세법」 제241조 제1항 및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

#### 4. WCO 신속반출지침

-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는 다품종 소량 물품 또는 저가 상품의 운송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물품들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1990년 초부터 일련의 가이드라인을 발전시켜 왔음
- WCO의 영구기술위원회는 2003년 3월 즉시반출 지침(Guidelines for the Immediate Release of Consignments by Customs)을 채택하였음
  - 신속반출 지침은 신속반출허용조건이나 특송 물품 통관 관련 데이터 내용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여 개정교토협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즉시반출허용 조건이나 특송 물품 통관 관련 필수 데이터 요소에 대해 보완하였음
  - 즉시반출 가이드라인은 총 16개 조항 및 2개의 부록으로 구성되어 특송 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적송품<sup>40)</sup>의 분류기준, 필요정보 및 적송품의 검사, 물품도착 전 운영업자<sup>41)</sup>가 세관에 제공하는 정보, 물품분류원칙, 세관과 무역업체 사이 상호협약 체결과 준수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적송품은 서신 및 서류,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저가의 적송품, 세금이 부과되는 저가의 적송품, 고가의 적송품의 4가지 범주로 구분됨<sup>42)</sup>
  - 범주 1은 상업적 가치가 없는 서신과 서류를 포함함
    - 세관가격신고서, 특별히 고안된 가방을 이용, 구두 또는 서면을 통한 통합신고서 (적하목록, 운송장, 기타 목록) 등을 제출하여 즉시 반출함
  - 범주 2는 인쇄물, 맹인을 위한 문헌, 상업적량으로 대량 공급되는 물건, 관세와 세금 부과 시 무시할 정도의 금액으로 면제 또는 포기되는 저가의 적송품(샘플, 제한가격 이하의 부탁하지 않은 선물, 적송품 자체에 관세나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적송품

40) 위탁매출을 하기 위하여 발송한 상품을 기업 내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적송품이라 하며 적송품은 수탁회사가 판매하기 전까지는 위탁회사의 재고자산으로 취급됨.

41) 모든 적송품을 운송하는 모든 서비스 업자를 운영업자(operators)라고 규정함.

42) 송선욱, 「WCO의 즉시반출 가이드 라인에 대한 고찰」, 『계간 관세사』, 2004년 봄호.

- 세관가격 신고서, 통합신고서(Consolidated declaration)(적하목록, 운송장, 화물신고서 또는 그러한 품목의 목록), 간이화물 신고서 등을 동관 및 즉시 반출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 범주 3은 범주 2에 속하는 적송품의 가격과 관세 및 세금의 한계를 상회하거나 관세와 세금을 면제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적송품으로 통관과 동시 반출 및 즉시반출 후 통관 2가지 유형으로 나뉨
    - 적송품에 대한 물리적 검사, 세관의 선택적 서류심사, 사전에 세관요청 정보제공, 화물도착 전 간이화물신고서 제출, 관세 및 세금 납부가 이루어지면 통관과 동시 반출 됨
    - 잠정신고서 제출, 적절한 재정보증, 서류 및 현품검사, 간이화물신고서제출, 통관 완료 후 관세 및 제세금을 납부완료하면 즉시 반출 후 통관함
  - 범주 4는 위의 범주 1~3까지 해당하지 않는 고가의 적송품으로써 잠정신고서 또는 간이화물 신고서 혹은 최소 정보를 담고 있는 송장 제출, 적절한 재정보증, 반출 시 또는 통관 전 혹은 제한품목 반출 시 허가·인증 등의 요구사항을 제공하면 즉시 반출 후 통관됨
- 범주 1,2,3의 경우 국내 법률 및 기타 필요조건을 기초로 하여 각 관세 당국이 세 가지 범주 내에 있는 화물을 반출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요소의 최소 목록을 특정해야 함<sup>43)</sup>
- 범주 1은 위험평가를 목적으로 하여 세관이 중량제한을 특정할 수 있음
  - 범주 2의 경우 혼재된 적송품에 있어 모든 개별 품목의 데이터 요소는 개별보고해야 하거나 개별 품목에 첨부해야 함
  - 범주 3의 경우 관세법 준수를 보장하는 범위로 제한하고 세계관세기구 관세데이터 모델을 기초로 해야 함

43) 정재호, 마정화, 정경화, 『주요국의 통관제도 및 개정교토협약 유보조항 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9.

- 운영업자는 적송품의 도착이나 선적을 세관에 사전통지 하도록 권고받고 있으며 사전 통지정보를 통해 즉시반출을 위한 몇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sup>44)</sup>
  - 도착 전 적송품의 범주 확인 후 적절한 반출·통관 절차는 실제 화물 도착 시 적용 가능함
  - 보다 높은 안전성이 요구되는 고위험의 적송품 확인을 위한 위험관리 기법을 적용할 수 있음
  - 서신 및 서류, 제한 또는 금지 화물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 없거나 혹은 저가의 무과세 적송품의 즉시반출을 가능하게 함
  
- 세관은 필수적으로 모든 적송품을 검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관리기법을 초로 검사를 수행해야 함<sup>45)</sup>
  - 세관이 집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법 및 규칙이 모두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입, 수출, 세관통과, 환적과 같은 절차에 관계없이 모든 적송품을 검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모든 적송품을 검사하는 것이 아닌 위험관리 기법을 기초로 검사를 수행해야 함
  - 화물이 다른 자격 있는 기관에 의해 검사 될 뿐 아니라 세관 또한 검사 계획이 있다면 세관은 가능한 하나의 검사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함
  - 세관·운영업자 공동시설의 경우를 포함한 통관장의 경우 운영업자는 세관으로부터 규정된 시설(대지, 시설, 공급품, 적절한 물리적 안전)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음
  - 세관직원이 반출·통관을 위해 특별히 지정된 장소에 상주 또는 필요할 시 출석할 수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운영업자가 부담함
  - 운영업자의 요구가 있고 회사의 수준 상 정당화하는 경우 세관은 세관의 자원이 허락하는 한 상업운송을 위해 세관 개청시간 외에 적송품의 반출·통관을 허용할 수

44) 정재호, 마정화, 정경화, 『주요국의 통관제도 및 개정교토협약 유보조항 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9.

45) 송선욱,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특송물품 수입통관시스템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 연구』 제6권 제3호, 2004, p. 191.

있음

- 세관에 의해 부과되는 그 어떤 비용도 서비스가 제공되는 비용의 범위로 제한해야 함

### Ⅲ. 주요국의 특송물품 통관절차

#### 1. 미국

##### 가. 개요

##### 1) 담당기관

- 미국 특송화물의 통관을 담당하는 기관은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이하 CBP)임<sup>46)</sup>
  - CBP는 2002년 설립된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의 산하기관으로 관세청, 이민국, 국경보호, 농무부의 동식물검역 등의 역할을 수행함
- 현재 6만 2천명 이상의 직원이 소속되어 있으며 주요 업무는 국제무역 및 여행을 촉진하고 관련법을 집행하며 테러범죄자와 무기의 입국을 방지하는 것임
  - 최초의 관세청은 1789년 설립되었고 그 후 1891년 출입국 심사 확대, 1912년 농업보호국 창설, 1924년 국경순찰국 설립, 2006년에 CBP가 항공해상국과 국제무역국을 설치함으로써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게 됨
- CBP의 주요 업무는 세관, 이민, 국경 보안 및 농업 보호를 하나의 협력 및 지원 활동으로 결합해 국경관리 및 통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함<sup>47)</sup>

---

46) CBP,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and Financial Reports, 2023. 6.; CBP 홈페이지, <https://www.cbp.gov/about>, 검색일자: 2023. 7.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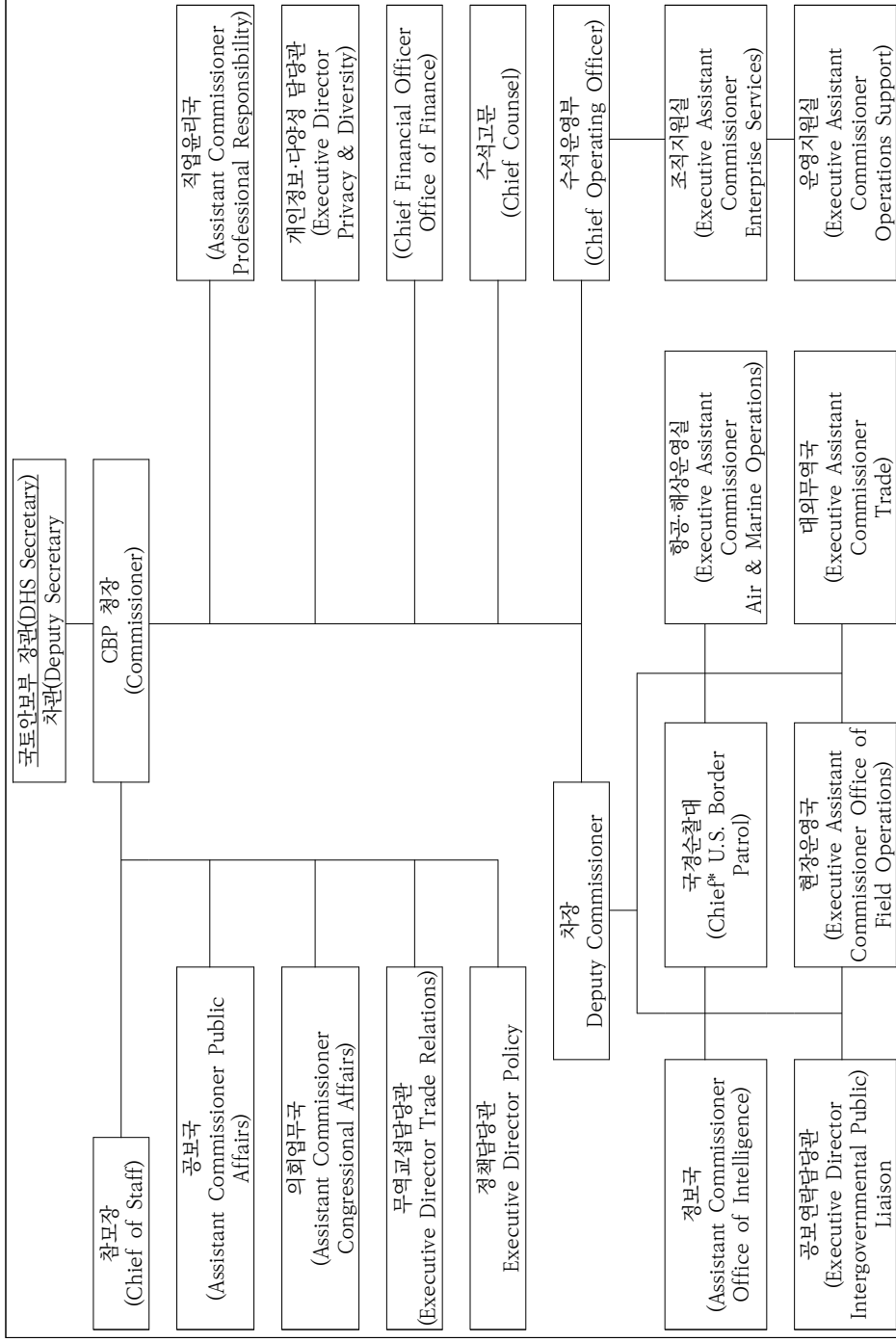
- 대테러는 미국 국민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테러리스트의 위협, 그들의 무기 및 행동을 예측, 탐지, 억제함
  - 국경확보는 불법 입국, 불법 활동 또는 국가 주권을 수호하고 국가 및 경제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기타 위협으로부터 항공, 육상 및 해양환경을 통해 국토를 보호함
  - 합법적 무역 촉진 및 수익 보호는 공정하고 경쟁적이며 규정을 준수하는 무역을 가능하게 하고 미국 법률을 집행하여 미국 국민의 안전, 번영 및 경제적 안보를 보장함
  - 합법적인 여행 촉진은 통관항 이전 및 입국항에서 위협을 예측, 감지 및 차단하여 여행 경험을 향상, 활성화 및 변환함
- 공보국, 의회업무국, 무역교섭담당관, 정책담당관이 청장 직속부서이며 주요 조직으로는 현장운영국(Office of Field Operations), 항공·해상운영국(Office of Border Patrol), 국제무역국(Office of International Trade)이 있음
- 현장운영국은 CBP에서 가장 큰 조직으로 테러 방지, 이민, 밀수 방지, 무역 규정 준수 및 농업 보호를 포함한 국경 보안을 담당하는 동시에 미국 항구에서 합법적인 무역 및 여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함
    - 현장운영국은 통관항을 통해 물품과 사람의 이동 원활화를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만 8,000명 이상의 직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국제적으로 40개 이상의 국가에 있는 20개의 주요 현장 사무소, 328개의 입국 항 및 70개 위치의 운영을 감독함
    - 현장운영국이 관할하는 통관항은 327개이며 그 외 현장운영사무소와, 전문센터, 캐나다, 중미, 아일랜드, 아랍에미레이트연합에 있는 사전허가사무소를 운영함
  - 항공·해상운영국은 발전된 항공 및 해상기술을 통해 미국 국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함
  - 국제무역국은 국제무역정책을 수립하고 정책방향에 따른 통합적 전략을 세우는 역할을 함
    - 환적을 포함한 무역상의 약탈적 관습을 배제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덤핑 등 위법

한 업체에 대해 법 집행을 지시하고 징계조치함

- 그 외 정보기술실은 부국장이 담당하며 정보 기술, 연구 및 개발 기능, 임무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자동화 및 기술 전략의 구현 및 지원을 담당함
  - 정보기술은 자동화된 정보 시스템, 연구 및 개발 기능 관리, 기관의 모든 법의학 및 실험실 지원을 말하며, 직원은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의 모든 운영 측면을 포함하여 모든 컴퓨터 및 관련 리소스를 관리함
  - 또한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과 다양한 무역 그룹 및 정부 기관 간의 컴퓨터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 사항을 설정하며 자동화된 수입 처리 및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함
  
- 한편 CBP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특송물품과 관련해서는 물품검사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전략 계획(E-commerce Strategy)을 개발해 운영 중임<sup>48)</sup>
  - 물품검사와 관련해서 업무처리 성격상 업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세관공무원 간의 교류 및 상호관리를 통해 검사대상 추출 및 물품반출 관련 지식을 일관성 있게 공유할 수 있고, 특송업체와 관세당국 간의 협업이 원활한 제도운영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권고함
  - 전자상거래 전략 계획을 통해 CBP는 민간 산업 및 외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관세 규정을 준수하고 수입업자로서의 책임을 이해하도록 하는 목적이며 또한 전자상거래 양이 증가하면서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교역국가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함

48) CBP, E-Commerce Strategy, 2018. 2.

[그림 Ⅲ-1] 미국 CBP조직도



자료: CBP 홈페이지, <https://www.cbp.gov/document/publications/cbp-organization-chart>, 검색일자: 2023. 7. 12.

2) 관련 법령<sup>49)</sup>

- 특송을 포함한 통관 관련 기본법은 연방법전(U.S. Code, 이하 U.S.C.) 제19편 관세(Customs Duties)의 제4장(Tariff Act of 1930)에 규정되어 있으며 관세법의 하위 규정인 연방규정(Code of Federal Regulation Title 19, 이하 C.F.R.)에 세부사항을 규정함
  - 우리나라는 관세법을 개별 법률로 운영하고 있으나 미국은 연방법전에 관세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는 형식임
  
- 특송에 관한 법령은 19 USC §1551 및 19 CFR §128에 해당하며 특송의 범위, 정의, 행정절차, 특송업체 신청절차, 신청 승인/거부 및 운영권 정지, 신청 처리 수수료, 통관절차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음<sup>50)</sup>
  
- 19 U.S.C. §1551은 육로, 해상 또는 항공으로 수입되는 상품은 재무부 장관이 지정한 입국항에 반입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통관은 소유자, 수입업자 또는 기타 승인된 사람이 필요한 서류를 세관 당국에 제출하여 제출해야 함
    - 필요 서류는 일반적으로 통관 양식, 상업 송장, 포장 목록 및 통관 절차에 필요한 기타 관련 문서가 포함되며, 수입업자는 수입품의 품목 분류, 관세 평가, 원산지 등 수입품에 대한 정확하고 진실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음
  - 제1551조의 특정 조항 및 요구 사항은 미국에서 관세법 및 규정을 집행하는 기관인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서 제정한 추가 규정 및 행정 절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함을 명시함

49) 미국 특송 법령은 USC(United States Code)와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19 > Customs Duties CHAPTER I >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EPARTMENT OF THE TREASURY PART 128 > EXPRESS CONSIGNMENTS Subpart A에 해당함.

50) Cornell 대학교 법령정보연구소 홈페이지, <https://www.law.cornell.edu/cfr/text/19/128.1>, 검색일자: 2023. 7. 13.

- 동 조항에서는 또한 상품 수입과 관련된 관세,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지불 요건을 설정함
  - 지불은 일반적으로 입국 시 또는 세관 당국이 결정한 지정된 기간 내에 이루어지며 세관원에게 상품의 허용 가능성, 분류 및 평가를 결정하기 위해 상품을 검사하고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검사를 수행하고 필요할 때 샘플을 채취할 수 있음

〈표 Ⅲ-1〉 미국 특송물품에 관한 법령

연방법 (U.S.C.)	관세 (Title 19. Customs Duties)	§ 1551 특송업체지정 (Designation as carrier of bonded merchandise)
연방규정 (C.F.R.)	특송 (Part 128. Express Consignments)	§ 128.0 범위(Scope)
		Subpart A 일반(General)
		§ 128.1 정의(Definitions)
		Subpart B 행정업무(Administration)
		§ 128.11 특송업체신청절차(Express consignment carrier application process)
		§ 128.12 신청승인/거부 및 운영권 정지 (Application approval/denial and suspension of operating privileges)
		§ 128.13 신청처리비용(Application processing fee)
		Subpart C 통관절차(Procedures)
		§ 128.21 적하목록(Manifest requirements)
		§ 128.22 담보(Bonds)
		§ 128.23 신고목록(Entry requirements)
§ 128.24 약식통관절차(Informal entry procedures)		
§ 128.25 일반통관절차(Formal entry procedures)		

자료: 미연방정부 홈페이지,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28?toc=1>, 검색일자: 2023. 8.

- 19 C.F.R. §128은 특송 일반, 행정, 통관절차로 분류되어 있으며 특송물품 운영업자 또는 운송업자가 반입하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위한 요건 및 절차에 관해 규정함<sup>51)</sup>

- 특송 일반 조항의 정의 규정에 따르면 특급특송물품(Express Consignments, 이하 특송물품)이란 특송업체가 미국 관세 영역 내로 반입하는 상업서류 또는 그 밖의 물품 등을 말함
  - 행정업무 관련법령에서 특송업체는 특송운영업자 또는 운송업자(Express Consignments Operator or carrier)로 표현되며, 특송업체 신청절차, 신청승인/거부 및 운영권 정지 규정, 신청처리비용 등에 규정함<sup>52)</sup>
  - 통관절차에서는 특송물품의 통관 시 필요 적하목록, 관세담보 신고, 수입신고, 약식 통관절차, 일반통관절차에 대해 규정함
- 모든 특송업체는 수입신고 시 전자통관시스템(ACE)을 포함해 자동적하목록시스템(AMS), 화물선별검사(Cargo Selectivity) 처리내역(Statement Processing), 관세 사연계시스템(ABI) 등 전자통관 시스템을 사용해야 함<sup>53)</sup>
- 단, 다음의 경우 예외임<sup>54)</sup>
- 미 관세율표(HTSUS) General Note 3(e)의 면제사항
  - 선박(8903 및 8907호 및 8905.90.10호 및 8906.00.10호로 분류되는 선박 또는 9804.00.35 또는 9813.00.35와 같이 HTSUS 98류에 분류되는 선박은 포함되지 않음)
  - §10.41a 및 § 10.41b(b)에 기술된 국제 운송 수단
  - 8601 또는 8602, 8606, 8602로 분류되는 철도 기관차 및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화물차
- 그 외 특송 시 적용되는 관세 감면에 대한 규정과 간이통관에 대한 규정 등이 있음
- 19 USC §1321는 소액물품 면세와 관해 관세 면제 물품을 800달러로 규정하는

51) 미연방정부 홈페이지,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28/section-128.0>, 검색일자: 2023. 7. 13.

52) 19 USC 1551, 19 CFR §128.1.

53) 19 CFR §128.23.

54) 19 CFR §141.4.(b)

## 내용입

- 19 USC §1498 및 §143.21~28은 승인된 특정 상품의 경우 간이통관이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음

나. 소액면세<sup>55)</sup>

- 2016년 2월, 2015 무역원활화집행법(The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에 따라 개인물품에 대한 소액면세 한도가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적용됨<sup>56)</sup>
  - 기존의 200달러 최소 금액기준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며, 800달러 한도 내에서 관세 및 MPF(Merchandise Processing Fee)가 면제됨<sup>57)</sup>
  - 소액면세한도는 1993년 200달러로 제정된 이후 면세한도 상향조정하는 법안이 지속적으로 제출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다가 2015년 통과되어 2016년 2월 24일 발효됨
- 면세한도 상향이 발표되기 전, 찬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추진된 큰 이유는 무역 거래 원활화에 기여하고 소비자의 비용을 낮추면서 CBP가 더 많은 관세 수입을 주는 품목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는 점임
  - John Drake 미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의회가 2016년 한도를 높인 데는 미국의 경제 경쟁 우위, 저가 화물에 대한 관세 징수 인력 및 행정낭비 방지 등의 이유가 있으며 최소면세한도를 낮춘다는 것은 많은 미국 중소기업들에게 큰 세금 인상을 의미하며 많은 기업들이 선적을 처리하기 위해 통관업자를 고용해야 함을 강조함<sup>58)</sup>

55) CBP 홈페이지, <https://www.cbp.gov/newsroom/national-media-release/de-minimis-value-increases-800>, 검색일자: 2023. 7. 13.

56) 19 U.S.C. §1321, 19 CFR 10.151.

57) 19 CFR §24.23 Fees for processing merchandise.

58) VOA 뉴스, "Packages From China Are Surging Into US: Some Say \$800 Duty-Free Limit Was Mistake," June 25, 2023, <https://www.voanews.com/a/packages-from-china-are-surfing-into-us-some-say-800-duty-free-limit-was-mistake/7152380.html>, 검색일자: 2023. 7. 21.

- 한편 소액면세 한도 상향으로 중국산 제품 수입신고가 증가하면서 미국 의회는 우선 관찰대상국인 중국의 상품이 소액면세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게 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함
  - 2022년 1월 얼 블루머나워 미 하원 의원은 수입 안보와 공정성에 관한 법(Import Security and Fairness Act)을 발의함
- 동법안은 면세수입은 품질검사 등 감시 견제 기능이 없어 불법, 유해 제품이 쉽게 수입되고 있고 강제노동, 지적재산권 도용 등의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함
  - 미 무역대표부의 드 미니미스(de minimis) 위반 감시품 목록에 오른 기업과 중국과 같은 비시장 경제 국가에 대해 관세, 세금 수수료 등 면제 등의 부당한 혜택을 중단시키자는 것이 골자임
    - 동 법안은 미 통상법 301조 및 232조에 근거하며 주요 내용은 반덤핑·상계 관세 적용, 중간 처리시설 이용 차단, CBP(세관 국경 감시청)의 해당 면세 발송물에 대한 정보 수집과 악의적인 행위자 단속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음<sup>59)</sup>
- 단 요건확인이 필요한 800달러 이하 물품은 정부관계기관(PGA)의 규정에 따라 일반 또는 간이 수입신고함
  - 주요 수입요건 확인기관 별 해당 품목은 다음과 같음
    - FDA(식약청): 식품, 약품, 의료용품, 화장품, 사료용품, 완구류 등
    - USDA(농림부): 농축산물 등
    - NOAA(대기해양청): 수산물 등
    - CPSC(소비자보호안전위원회): 완구, 유아용품, 라이터, 페인트, 자전거 등
    - EPA(환경보호청): 자동차, 자동차부품 등
    - FCC(연방통신위): 휴대폰, 블루투스제품 등 주파수 발생품목 등
- 철도, 해상, 항공운송으로 수입되는 저가 물품에 대해서는 미 세관이 통관자동화시스

59) 『어패럴뉴스』, 「美 의회, 'De minimis(미소기준)' 악용 막는 수입 규제법 발의」, 2022. 1. 26., [http://m.apparelnews.co.kr/news/news\\_view/?idx=195332](http://m.apparelnews.co.kr/news/news_view/?idx=195332), 검색일자: 2023. 7. 21.

템(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에 적절히 게시된 전자 적하목록을 검토 후 통관을 허용

- 트럭으로 국경을 통과하는 저가 적하물의 경우, 일반 검색 통로를 통과함으로써 전자 트럭 적하목록 방식으로 통관함

□ 약식신고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음<sup>60)</sup>

- 2,500달러 이하 대부분의 물품에 적용되나 미국 품목분류(HTSUS)의 제99류 3절 및 4절(Subchapters III, IV)에 해당하는 품목은 250달러 이하로 제한
- 개인 이삿짐 등 개인이 사용하던 물품으로 이민이나 해외근무 후 귀국하는 경우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관세가 면제되며 판매 또는 양도 금지
- 도서관 또는 기타 기관에서 수입하는 책자
- 미국산 제품으로 다시 반입되는 화물 중 금액이 1만달러 미만인 경우 등

□ 적용 배제대상은 다음과 같음

- 알코올음료, 알코올이 함유된 향수, 담배류는 관세 또는 세금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
- 미국 세관이 적하물이 하나의 주문 또는 계약하에 여러 개로 나뉘어 배송되는 물품이거나, 면세 목적 또는 다른 여러 법규나 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뉘어 배송된 것으로 판단한 경우, 면세가 허용되지 않음
- 관세 쿠틀라가 적용되는 상품의 경우에도 면세가 허용되지 않음
- 외국 정부기관에서 규제사항 적용을 위해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면세 제외
- USTR의 지식재산권 우선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된 비시장경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은 면세 혜택 중단

□ 소액수입물품에 대한 별도의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는 없음<sup>61)</sup>

60) 19 CFR 143.21.

61) 정다운·이재선·김미정, 『전자상거래 물품의 관세 과세상 쟁점사항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p. 58.

## 다. 특송물품의 통관절차

### 1) 수입물품 통관

- 미국 수입물품 통관유형은 일반통관, 약식통관, 소액통관 3가지로 과세가격에 따라 물품신고방식이 달라짐
    - 2,500달러 초과인 경우 일반통관, 2,500달러 이하는 약식통관, 그중 800달러 이하 소액물품은 면세로 소액(목록) 통관이 적용되며 소액통관 수하물이 면세 대상이 아닌 경우 검사 후 관세 및 내국세 등을 납부함
  - 특송 통관은 운송서비스업체에 고용된 관세사가 통관하여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되며 특송서비스 이용자는 운송비를 포함한 통관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함<sup>62)</sup>
    - 특송물품은 서류, 샘플, 해외 친인척 선물, 해외에서 인터넷 직구 상품 등이 주로 해당되며 구매자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및 수수료 이외에 운송비, 물품취급 비용 및 통관수수료를 부담함
  - 미국 세관에 의해 공인된 특송업자만이 특송운송을 운영할 수 있으며 CF301 이용하여 담보를 신청해야 함
  - 특송업자는 물품 도착 전 모든 수입물품에 대한 적하목록 정보를 제출함
    - 적하목록에 기재하는 정보는 물품 원산지, 송하인 이름·주소·국적, 최종수하인 이름 및 주소 등임
  - 특송업체는 CBP와 파트너십을 통해 검사대상을 추출하거나 일관성 있는 물품반출을 유도할 수 있음
    - X-ray 장비, 방사선 감지 등의 기술을 이용해 원활한 통관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있음
- 62) 특송은 특송업체가 자체적으로 세관에 신고하는 수입유형으로 관세사를 통하지 않고 해외직구의 상당수가 여기에 포함됨.

가) 일반통관(Formal Entry)절차<sup>63)</sup>

- 특송물품 중 물품 가치가 2,500달러 이상의 세관 행정업무가 필요한 상업용이나 판매 목적으로 수입된 모든 수입화물 혹은 수입허가 규제품목, 국가의 세입보호 대상 품목 등은 정식 통관절차를 따름
- 특송물품의 통관절차는 도착 전 적하목록 정보 제출 → 특송업자 시설 등 물품 장치 및 원산지별 특송물품 적하목록 분류 → 수입신고 → 관세 등 납부 → 물품 반출 순서임
  - 적하목록 여부와 상관없이 특송업자에 의해 수입되는 물품이 특송화물로 취급됨
- 적하목록 제출은 CBP Form 7533이며 운송인은 해상화물은 출항 24시간 전까지, 항공화물은 도착 4시간 전까지 세관에 제출함
- 반입신고(Entry)는 15일 이내에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는 CBP Form 3461을 사용함
- 모든 특송물품의 수입요건은 세관의 제반 전자통관시스템을 사용하여 수입되어야 하며, 전자통관시스템의 처리를 위해 바코드 인식이 가능한 통관서류번호(entry number)가 제출되어야 함

나) 약식(간이)통관(Informal Entry)절차<sup>64)</sup>

- 800달러를 초과하고 2,500달러 이하인 제품인 경우 약식통관이 적용되며 신고서식은 CF 3461, CF 7501을 사용함
  - 약식통관은 담보제공, 정산 등이 생략되며, 수입신고인은 화주, 구매자 또는 화주, 구매자, 수하인으로부터 위임된 관세사로 함<sup>65)</sup>

63) 19 C.F.R. §128.25.

64) 19 C.F.R. §128.24.; 19 C.F.R. §143.23.(i)

- 수입신고 및 납세신고 세관양식은 CF 3461, CF 7501을 사용함
- 단 금지되거나 제한된 상품, 코터 또는 기타 양적 제약이 적용되는 상품 등 약식통관에서 제외된 물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sup>65)</sup>
  - 2,500달러 이하의 개별 선적 건을 통합하여 한 건의 수입신고를 할 수 있음
- 수입신고인은 허브 개시 또는 특송물품 운송시설의 가동 이전에 일반수입신고 서식인 CF 3461을 제출하여야 하며 물품을 반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고 납세신고서 CF 7501<sup>67)</sup>를 제출하여야 함
  - 수입신고서의 제출서류 대신에 송장사본 또는 사전 적하목록을 제출할 수 있음
  - 세관은 필요한 경우 일별 또는 선적별로 각 해당하는 선적건에 대해 CF 3461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입신고인은 상업송장 또는 사전적하목록, 수입번호와 기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단 2,500달러 이하의 화물이라도 미국 농림부, FDA 등 다른 기관의 규정의 확인이 필요한 품목은 가치에 상관없이 약식 통관이 적용되지 않음
  - 식품 샘플의 경우 세관은 통관을 보류하고 수입자에게 정식 통관을 요구할 수 있음
- 특송업자 또는 운송인은 물품의 도착 전에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운송수단을 포함한 모든 수입물품에 대한 적하목록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입신고서 및 제반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음
  - 적하목록에 기재해야 하는 정보는 물품의 원산지, 송하인 이름, 주소 및 국적, 최종 수하인 이름 및 주소, HS코드, 품명, 수량, 중량 및 가격으로 함
  - 800달러를 초과하는 일반수입신고 및 약식 대상물품은 수량, 중량 및 가격만 기재함

65) 19 CFR 143.21.

66) 19 U.S.C. §1498

67) 일반적인 informal entry 서식은 CF 368/368A 또는 CF 7501이며,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신고문안을 기재한 상업송장 제출이 가능함.

다) 목록통관(de minimis entry)<sup>68)</sup>

- 총 공정소매가격(Total fair retail value)이 800달러 이하의 물품은 적하목록(서류) 방식인 Section 321 또는 ACE 전자통관 방식인 Entry Type 86을 통해 목록통관 가능함
  - 1인당 1일간 수출국 소비자가격의 합이 800달러 이하인 상품들의 묶음에 한하며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 개인/법인 또는 자가사용/상용 무관, 분산반입은 합산됨
    - 수입요건확인 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가능함
    - 세금납부 및 요건위반 책임은 수령자임
  - 소액물품의 경우 B/L 또는 각 B/L에 해당하는 적하목록 리스트를 제출하여 수입신고로 간주함<sup>69)</sup>
    - 화주, 구매자 또는 관세사 이외에 수하인도 수입신고인이 될 수 있음
    - 사전적하목록을 수입신고로 사용하는 경우 적하목록에서 별도로 금액별로 분리해야 되며 HS코드 및 납세신고서는 요구되지 않음
    - 리스트의 기재항목은 물품의 원산지, 송하인 이름, 주소 및 국가, 최종 수하인의 이름, 주소 및 물품의 세부설명, 수량, 중량 및 가격
- 한도 내 저가 선적품 제품은 관세 및 제세금 납부가 면제됨
  - 물품취급수수료(Merchandise Processing Fee)와 항만유지수수료(harbor maintenance fee)가 면제됨
    - 물품취급수수료(Merchandise Processing Fee)는 수입 금액의 0.3464%(최소 25.67달러~최대 497.99달러)가 부과됨
- Section 321은 적하목록이나 선하증권(B/L)을 제시하여 신고하는 적하목록에 의한 반출(release from manifest) 절차임

68) CBP, E-Commerce and Section 321 Shipments Overview, 2020. 8. 13.

69) 19 CFR §143.23 (j), 우편물 또는 휴대품에는 적용하지 않음.

- 적하목록 통관방식으로 특송 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류에 포함된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의 개인정보 및 물품 정보를 토대로 서류만으로 통관을 진행함
- Section 321은 적하목록 통관의 경우 CBP가 물품판매자 등 세부정보를 얻지 못해 테러물품, 마약, 지식재산권침해물품 등 불법물품 검사선별에 한계가 있음<sup>70)</sup>
- 반면 Type 86 방식은 ACE를 통한 전자방식으로 통관이 진행되며 모든 소액면세물 품에 대해 HS 10단위정보 등을 전산으로 신고해 CBP와 기타 정부기관(PGAs)에 높은 가시성을 제공함<sup>71)</sup>
- Type 86 방식은 2019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면세한도가 늘어나면서 소액통관이 많아지고 있으며 Entry Type 86을 통한 전자통관이 증가 있음
- 따라서 Type 86은 의약품, 식품 등 PGAs에서 수락한 상품을 통관시킬 수 있으나 section 321 방식으로 통관 시 수입신고 불가함
  - Section 321 entry는 Food and Drug Administration(FDA), Food Safety Inspection Service(FSIS), National Highway Transport and Safety, Administration(NHTSA),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CPSA), U.S. Department of Agriculture(USDA), Animal &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APHIS) 등에서 규정하는 물품은 목록통관 할 수 없음
- Type 86은 전자방식으로 통관이 진행되어 적하목록 통관방식에 비해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이 적으며, 수입신고가 전자통관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므로 전자적형태의 신고내역 확보가 가능하고 우범화물 선별검사 등 위험관리 강화가 가능함
  - 소액면세신고는 2019년 신설되었으며 모든 800 달러 이하 물품의 구매자, 수입자, 또는 이를 대리하는 관세사 등은 반입 전후 또는 15일 이내에 10개 데이터 항목을 포함한 Entry Type 86 신고를 전자통관(ACE)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함<sup>72)</sup>

70) E-Commerce 무역통관 세미나, 손영수 영사.

71) 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 Partner Government Agency.

- 데이터 항목: ① B/L 또는 AWB 번호 ② Entry 번호 ③ 입항(예정) 세관 ④ 송하인 이름·주소·국가 정보 ⑤ 수하인 이름·주소 정보 ⑥ 원산지 ⑦ 수량(중량 불필요) ⑧ 수출국의 공정 시장가격(Fair Retail Value) ⑨ 10단위 HS코드 ⑩ (요건확인 물품의 경우) 신고자 IOR 번
- Entry Type 86은 유관기관 요건확인이 필요한 경우 싱글윈도우상의 문서이미지 시스템(DIS) 등을 통해 유관기관에 첨부파일을 전자적으로 전송 및 회신함

〈표 III-2〉 Section 321 및 Entry Type 86 비교

Section 321 Entry	Entry Type 86
① 원산지	① 원산지
② 송하인 이름·주소·국가 정보	② 송하인 이름·주소·국가 정보
③ 수하인 이름·주소 정보	③ 수하인 이름·주소 정보
④ 수량	④ 수량
⑤ 수출신고금액(Fair Retail Value)	⑤ 수출신고금액(Fair Retail Value)
⑥ 물품명세서	⑥ 10단위 HS코드
⑦ 중량	⑦ 통관서류번호(Entry Number)
	⑧ B/L 또는 AWB 번호
	⑨ 미국 세관 항만 코드(Port of entry)
	⑩ 요건확인물품 신고자 IOR(Importer of Record)
	⑪ 요건확인물품 PGA Data S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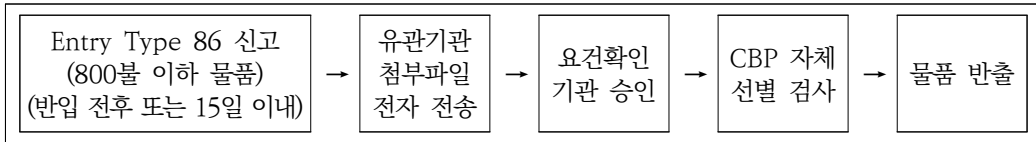
자료: 미 연방관보, "Section 321 Data Pilot," 2019. 7. 23. 참고하여 저자 작성

- PGA 데이터 요구사항을 준수해야하는 소액 배송에 적용되며 CFS 창고에서 출고하는 경우 상품처리수수료(MPF)를 지불할 필요 없음<sup>73)</sup>
- 항공, 해운, 육송 등 모든 교통수단에 적용되며 화물반출은 전자 방식으로 이뤄짐

72) 주미대사관 관세관 강연호, 미 전자상거래 통관제도 변경 관련 동향, <https://customscity.com/ko/cbp-entry-type-86/>, <https://globletrade.services/blogs/section-321-cbp-shipment-type>.

73) 물품취급 수수료(Merchandise Processing Fee)는 수입 금액의 0.3464%(최소 25.67달러~최대 497.99달러)가 부과됨.

[그림 Ⅲ-2] Entry Type 86 통관절차도



자료: 미 연방관보, “Section 321 Data Pilot,” 2019. 7. 23. 참고하여 저자 작성

- 두 방식 모두 반덤핑/상계관세 적용 품목, 쿼터 물품, 담배/술 with IRS Tax, Ag Fees 등 안전,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잠재적 위반 물품확인이 필요한 품목들은 목록통관이 불가함
- Section 321이 허용하지 않는 물품은
  - 물품검사가 필요한 물품(수입신고가격과 무관)
  -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물품 Merchandise subject to Anti-Dumping Duty (ADD) and/or Countervailing Duty(CVD)
  - 쿼터(Quota) 적용 물품(Goods subject to quota)
  - 다음 PGA(Participating Government Agencies) 요건 품목들
    - :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 FSIS(Food Safety Inspection Service)
    - : NHTSA(National Highway Transport and Safety Administration)
    - : CPSA(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 : USDA(U.S. Department of Agriculture)
    - : APHIS(Animal &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 Entry Type 86 허용되지 않는 물품은 다음과 같음
  - 반덤핑 및 상계관세부과 품목(AD/CVD)
  - 쿼터물품(Quota)
  - 내국세법에 의해 과세된 물품(Taxed under the Internal Revenue Code)
  - 담배 및 주류(TTB regulation, such as tobacco and alcohol products)

〈표 Ⅲ-3〉 수입신고 유형

구분	대상	신고 서식	제출 서류	수입신고인	관세부과 여부
일반통관 (Formal Entry)	2,500달러 초과	CF 3461 CF 7501	도착일자, 도착항구, 통관서류번호, 수입자정보, 담보가격, 수입물품가격, 운송수단, 물품적재장소, 품목분류번호, 원산지 등	수하인 또는 관세사	과세
간이통관 (Informal Entry)	801달러 이상 ~ 2,500달러 이하	CF 3461 CF 7501	송장사본 또는 사전적하목록으로 대체 가능 담보 불필요 즉시정산 품목분류번호 생략	화주, 구매자 또는 관세사	과세
소액통관 (Low-value Entry)	800달러 이하	section 321 또는 Entry Type 86	소액면세 신고 담보(Custom bond) 불필요 즉시 정산(Liquidation) 납세신고(Entry summary) 불필요 품목분류번호 생략	Section 321 Entry: 특송사 또는 관세사 Type 86: 화주, 구매자 또는 관세사	면세 (납세신고 없음)

자료: 미 연방법 및 연방규정 참조하여 저자 작성

## 2) 특송물품 검사 및 정보관리

- 미국의 물품검사제도는 9.11테러 이후 관련 법안들에 대한 조치가 강화되면서 위험 물품을 선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되고 있음<sup>74)</sup>
  - 2001년 테러 이후 미국은 물품의 도착 이전에 사전 정보 입수, 거래당사자의 명확한 정보, 물품의 수입경로에 관한 정보 수집에 중점을 두고 있음
- 특송물품 검사를 위해 세관과 특송업체는 정보교환 파트너십을 통해 특송물품 위험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x-ray 장비, 방사선 감지기 등 고도화된 기술을 사용해 적법한 물품을 신속하게 처리함<sup>75)</sup>

74) 개정교토협약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검사란 물품의 성질, 원산지, 상태, 수량 및 가격이 물품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세관당국이 행하는 물품에 대한 물리적 검사로 정의됨.

- 항공화물에 대해 선적 전 4시간 전에 적하목록을 제출받아 ATS(Automated Target System)이 입수한 정보를 상이한 중량 및 가격을 다수의 정보항목에 부여하여 알고리즘을 가동해 등급을 매김
  - 이 등급을 사용하여 CBP 공무원은 표적대상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선별할 수 있음
  - 소액면세한도를 상향조정하여 행정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제도운영의 성공요소 중 하나임
  - 스캐닝검사는 비파괴방식으로 컨테이너의 화물 내역을 분석하는 것으로 쓰임
  - 특송업체와 세관 사이에는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교환 등을 통해 특송업체의 정보가 세관에 전달되며, 세관이 특송업체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음<sup>76)</sup>
- 즉시반출가이드라인에서는 검사는 특송업체가 먼저 통관장에 반입된 모든 물품을 즉시 자체 X-Ray 검사를 실시하며 목록통관특송물품과 간이신고특송물품·일반신고특송물품을 구분하여 복수판독함
- WCO 즉시반출가이드라인의 목적은 특송물품의 신속통관이며 이를 위해 적송품의 적절한 분류, 신속통관에 따른 물품관리상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위험관리기법의 활용 등을 규정하고 있음<sup>77)</sup>
  - 세관은 목록통관특송물품의 경우 목록통관특송물품검사대상선별시스템(목록통관 C/S 시스템)에 의한 전산선별과 통관목록 심사에 의한 수작업 선별로 검사대상을 선별하고 간이신고특송물품의 경우 간이신고특송물품검사대상선별시스템(간이신고 C/S 시스템)에 의한 전산선별과 간이신고 목록화면을 통한 수작업 선별로 검사대상을 선별하며 일반신고특송물품의 경우 일반수입물품의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음

75) WCO 즉시반출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특송업체는 세관과의 양해각서 협정을 통해 특송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통해 세관과 민간업계의 상호 협약함을 명시함.

76) 송선욱, 「국제e-commerce 거래에 대한 세관의 효율적 관리 방안」, 『관세학회지』, 제19권 제2호, 2018, p. 16.

77) WCO, Guidelines for the Immediate Release of Consignments by Customs.

- 기본적으로 특송화물 검사는 중앙허브시설과 특송업자시설로 지정된 장소에서 수입 신고와 검사반출이 이뤄짐
  - 중앙허브시설(Centralized hub facility)을 통해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검사, 반출이 이루어지며 세관 운영시관과 별도로 지속적으로 가동됨<sup>78)</sup>
  - 특송업자시설(express consignment carrier facilities, 이하 ECCF)은 특송물품을 검사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시설임<sup>79)</sup>
    - 특송업자시설은 주요 입국항구 및 주요 공항(JFK, LAX, MIA)에 항만책임자(port director)가 승인한 특송물품 검사 전문 시설을 말함
    - ECCF는 25곳이 있으며, 190명의 CBP 공무원이 CBP 검역전문가가 함께 24시간 수백만건의 수출입통관을 검사·관리함
- 세관 허가를 받은 특송업체만이 ECCF 시설에서 선적물 검사가 이뤄지며 항공 요금 청구서당 1.07달러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함<sup>80)</sup>
  - DHL, UPS, FedEx 등의 특송사는 특송업자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ECCF로 운영되기 전에 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음<sup>81)</sup>
    - 세관책임자에게 서면신청서 요청, 청사진(blue print), 평면도 및 시설 위치, ECCF 운영에 대한 설명, 시설 내 모든 운송업체 목록, 공식 및 비공식 항목을 포함한 예상 거래량,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함<sup>82)</sup>
- 중앙허브시설과 ECCF 외에도, 전자상거래 화물 급증으로 2019년부터 전국 주요 국제공항의 CFS(Container Freight Station)에서도 특송물품 검사를 진행하고 있음<sup>83)</sup>

78) 19 CFR 128.1 (d)

79) 19 CFR 128.1 (e)

80) Avalara, "What importers need to know about Entry Type 86," June 29, 2020, <https://www.avalara.com/blog/en/north-america/2020/06/what-importers-need-to-know-about-entry-type-86.html>, 검색일자: 2023. 7. 21.

81) GeTS Asia Pte. 홈페이지, <https://globletrade.services/blogs/how-clear-shipments-express-consignment-carrier-facility-eccf>, 검색일자: 2023. 7. 21.

82) GeTS Asia Pte. 홈페이지, <https://globletrade.services/blogs/how-clear-shipments-express-consignment-carrier-facility-eccf>, 검색일자: 2023. 7. 21.

83) 『K글로벌타임즈』, 「수출 신고 관련 간소화의 필요성」, 2020. 9. 30., <https://www.kglobaltimes.com>.

- 특송화물이 도착하는 공항에서 section 321(지가발송물)화물을 통관할 수 있는 승인을 받은 세관 중개인 또는 화물운송업체를 ECCF 또는 CFS 근처에서 찾을 수 있음
- 특송물품 정보 관리와 관련해 미국 CBP는 전자상거래 기업과 특송업체로부터 주문, 결제, 물류정보를 세관시스템으로 전송받아 위험분석과 선별 등에 활용하는 Section 321 Data Pilot시범 사업을 시행 중에 있음<sup>84)</sup>
  - 물품정보는 항공, 트럭, 철도에 의한 선적품뿐 아니라 해상 및 국제우편 선적품도 포함함
  - 2019년 7월부터 도입되어 2023년 8월까지 지속되고 있음<sup>85)</sup>
    - 2019년 7월 도입되어 2019년 12월 선적품 적용 범위가 확대됐으며, 2021년 8월에 2023년 8월까지 프로그램 연장이 공고된 상태임<sup>86)</sup>
- Section 321 Data Pilot에는 특송 업체 중 FedEx, DHL, UPS가 참여하고 있음
  - 참여업체의 자격요건은 CBP로 전자적으로 데이터를 제출할 수 있고 CBP와 현존 point-to-point 연결을 통해 메시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갖추어야 함
    - 만약 기술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참여자의 경우에는 그 실험에 참여하는 운송인이나 관세사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이들로 하여금 참여자를 대신하여 정보를 CBP로 전송하는 현존 point-to-point 연결을 가지고 있어야 함
    - CBP와 새로운 point-to-point 연결을 확립한 참여자는 Interconnection Security Agreement (ISA)<sup>7)</sup>에 서명하거나 또는 필요할 경우 현재 ISA를 수정해야 하며 DHS 4300a security guide에서 정의한 보안 정책을 따라야 함(U.S. CBP, 2019b)

com/news/curationView.html?idxno=22645, 검색일자: 2023. 7. 21.

84) 송선욱, 「미국 세관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관련 실험 프로젝트 분석과 시사점」, 『관세학회지』, 제23권 제2호, 2022, p. 178.

85) 연방관보 86 FR 48435.

86) 연방관보 84 FR 67279~67281.

□ CBP에 전송하는 데이터는 다음과 같음<sup>87)</sup>

- Originator Code, 운송인 또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와 같은 참여자의 형태, 선적품 추적번호 또는 House Bill 번호, Master Bill 번호 중 하나, 운송 형태에 대한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전송
  - 선적품 최초 개시자 성명과 주소로, 예를 들어 선적품의 이동을 야기시키는 주체로, 매도인, 송화인 또는 제조업자가 될 수 있으나 외국의 혼재업자는 아님

### 3) 기간납부제도(Periodic Monthly Statements 또는 Periodic Monthly Statement Process)<sup>88)</sup>

□ 기간납부제도(Periodic Monthly Statements, 이하 PMS)는 월간납부 방식으로 한 달간 발생한 모든 관세, 세금 및 수수료를 다음 달 15번째 근무일에 납부하는 방식을 말함

- 미국 관세납부 방식은 일시납부로 지불되는 추정관세와, PMS로 지불되는 추정관세로 나뉨

□ PMS는 2004년 7월 전자수입통관시스템(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 이하 ACE)이 시행되면서 채택됨

- ACE는 미국 세관의 싱글 윈도우 형식의 통관시스템으로 그동안 관세사들만 사용하던 ABI(Automated Broker Interface)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대체해 수입업자들까지도 볼 수 있도록 시행됨<sup>89)</sup>
- ACE는 자동통관을 목적으로 하며 향후 수입자나 관세사 외에 다른 업체에서도 모든 수출입 진행과정을 모두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임<sup>90)</sup>

87) 송선욱, 「미국 세관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관련 실험 프로젝트 분석과 시사점」, 『관세학회지』, 제23권 제2호, 2022, p. 174.

88) CBP, “Participating in Periodic Monthly Statements”, 2022. 6.

89) ACE는 C-TPAT, CSI(Container Security Initiative)와 함께 미국의 대 테러대책 가운데 하나로 수출입 시스템을 통합한 통관시스템이며 최첨단 위험관리, 목표관리시스템, 세관신고, 관세 지불업무 등이 포함됨.

- 관계당국, 관세사, 수입업자 모두 물품이 어떻게 처리되고 관세를 얼마나 냈으며 수입품의 위치가 어디쯤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음
  - 전자방식으로 식약청(FDA), 농무부(USDA) 등이 정부기관에 동시 정보 전송이 가능함
  - ACE의 장점은 더 빠른 데이터 접수, 시간단축 및 종이비용 절감, 정부단체 간의 소통 자동화 등이며 ACE 포털 계정을 통해 이뤄짐
- PMS 납세 방법은 본인이 선택하는 경우 상품 출고 다음 달 15일 근무일까지 납세를 연기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흐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PMS 결제는 거래별에서 무이자 월별 납부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제공됨<sup>90)</sup>
- 특정 월에 출시된 상품에 대한 개별 항목요약을 통합해 다음 달 15일까지 결제할 수 있음
  - 관세납부에 필요한 운전자본 관리에 유연성을 제공하고 잠재적으로 상당한 현금 흐름을 제공함
  - 자동브로커인터페이스(ABI) 자체 신고자 및 브로커인 수입업자가 지정된 월에 대해 지정된 항목 요약에 하나의 명세서로 납부할 수 있음
  - 회계 및 보고 프로세스를 간소화함
  - 중개인이 수입업체를 대신하여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자가신고자인 수입업자를 포함한 신고업자가 항구별로 별도의 PMS를 요청하거나 다음을 수행할 수 있음
  - CBP에 개별항구의 통관을 통합하도록 요청가능함
  - 관세사(Broker)가 수입업체를 대신하여 결제할 수 있음

90) 납세신고서는 보통 관세사용 자동 시스템인 ABI, 자동 적하목록 시스템인 AMS, 자동통관시스템인 ACE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ACE 시스템의 사용이 많아지고 있음. itSILKROAD 홈페이지, <https://www.itsilkroad.com/Board/Archive/Detail?seq=10047&uni=n9fa2y>, 검색일자: 2023. 7. 21.

91) CBP 홈페이지, [https://www.cbp.gov/sites/default/files/documents/section\\_1\\_pms\\_3.pdf](https://www.cbp.gov/sites/default/files/documents/section_1_pms_3.pdf), 검색일자: 2023. 8. 8.

- ACE 프로그램을 통해 PMS를 볼 수 있음
- 수입업체는 ACcount list에 포함되어 있고 PMS를 승인한 IR 번호에 대한 PMS만 볼 수 있음

## 2. 일본

### 가. 개요

#### 1) 담당기관<sup>92)</sup>

- 일본의 통관행정조직인 관세국은 일본 재무성(財務省) 본성의 하위기관 중 하나로 일본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관세행정과 관련한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함<sup>93)</sup>
  - 재무성 조직은 본성과 외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세 및 통관 관련 행정은 본성의 관세국과 세관에서 담당함
    - 본성은 관세국, 세관, 관세중앙분석소, 세관연수소 등으로 구성되며 외성은 국제청임<sup>94)</sup>
- 관세국의 조직은 총무과, 관리과, 관세과, 감시과, 업무과, 조사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산하에 실과 관을 두고 있음
  - 총무과 산하의 사무관리실은 수출입·항만 관련 정보 처리에 관한 사무 및 세관의 사무에 관련된 전산 처리에 관한 조사, 기획, 조정을 담당함
  - 세관고사관리실은 세관사무의 운영, 직원 복무에 관한 고사를 담당함

92) 일본 관세국 홈페이지, <https://www.customs.go.jp/zeikan/organaization.htm>, <http://www.customs.go.jp/zeikan/history.htm>, 검색일자: 2023. 8. 2.

93) 일본 관세국 홈페이지, [https://www.customs.go.jp/english/zeikan/kikou\\_e.htm](https://www.customs.go.jp/english/zeikan/kikou_e.htm), 검색일자: 2023. 8. 2.

94) 일본재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go.jp/>, 검색일자: 2023. 8. 2.

- 국제협상담당과 국제협력담당 참사관은 경제 협력 및 개발에 관한 국제기구에 관한 관세 등에 관한 업무, 세계무역기구에 관한 업무, 지역 협력에 관한 국제기구에 관한 관세 등에 관한 업무, 관세협력이사회에 관한 업무, 외국의 관세 등에 관한 제도의 조사, 연구 및 외국의 무역 사정 조사, 연구, 관세 등에 관한 다수국간협정 및 양국간협정 또는 협의의 기획·입안 업무, 관세국의 업무에 관한 국제 협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함
- 경제연계실은 경제상의 제휴에 관한 사항의 기획·입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함
- 특수관세조사실은 특수관세에 관한 조사를 담당함
- 원산지 규칙실은 원산지 규칙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함
- 세관조사실은 세관 행정에 관한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항의 조사·연구를 담당함
- 지적재산조사실은 지적 재산 침해 화물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화물에 관한 조사를 담당함

〈표 Ⅲ-4〉 일본관세국 조직 및 업무

부서명		주요 업무
총무과	사무관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 톤세 및 특별 톤세에 관한 정책 일반에 관한 사무</li> <li>• 관세국·세관의 기구·정원, 예산에 관한 사무</li> <li>• 관세국내의 종합 조정</li> </ul>
	시스템협력전문관	
관리과	세관고사관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관 직원의 인사, 교양, 훈련</li> </ul>
관세과	참사관(국제협상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 등에 관한 제도의 조사, 기획, 입안</li> <li>• 관세 등에 관한 정책의 기초가 되는 사항의 조사, 연구</li> <li>• 관세·외환 등 심의회 관세 분과회의 서무에 관한 사무</li> <li>• 무역통계 작성, 공표</li> </ul>
	참사관(국제협력담당)	
	경제연계실	
	특수관세조사실	
	원산지규칙실	
	세관조사실	
	국제협력전문관	
	관세정책전문관	
관세국제협상전문관		

〈표 III-4〉의 계속

부서명		주요 업무
감시과	감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세법규에 의한 수출입화물, 선박, 항공기 및 여객의 단속에 관한 사무</li> <li>여객 및 승무원의 휴대품 등에 관련된 관세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li> <li>개항 및 세관공항에 관한 사무</li> <li>보세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무</li> </ul>
	보세조사관	
업무과	지적재산조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세, 톤세, 특별 톤세 등의 부과 징수</li> <li>관세율표의 품목 분류에 관한 사무</li> <li>과세가격의 산정에 관한 사무</li> <li>화물 수출입 허가, 승인</li> <li>수출입화물 분석</li> <li>통관업의 허가, 통관업자의 감독, 통관사 시험에 관한 사무</li> <li>관세 등 불복심사회에 관한 사무</li> </ul>
	관세분류조사관·우편물의 수출입	
	관세평가전문관	
	공인사업자조정관	
조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입화물의 가격, 운임, 보험료 등의 조사</li> <li>수출화물의 조사, 검사에 관한 사무</li> <li>관세법규의 범칙사건의 조사, 처분, 정보에 관한 사무</li> <li>정보에 관한 외국 세관 당국 등과의 연락, 조정</li> </ul>

자료: 일본 관세국 홈페이지, <https://www.customs.go.jp/zeikan/kyoku-soshiki.pdf>, 검색일자: 2023. 8. 2.

## 2) 관련법령

- 일본의 통관 관련 법률은 「관세법」과 「통관업법」, 「수출입·항만관련 정보처리시스템(NACCS)법」이 있음
- 「관세법」은 수입 금지 품목, 관세 납부절차, 보세제도, 수입신고 및 허가 절차, 위반자에 대한 조사 및 벌칙 등을 규정함
  - 「통관업법」은 수입자를 대신해 세관 수입신고 등 통관절차를 수행하는 통관업체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관세사법과 유사함
  - 「NACCS 법」은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수출입업무의 처리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세관 업무, 동식물 검역, 사람 및 운송수단의 출입국 관리 업무의 처리 등 관계 정부부처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그 외 관세에 관한 법으로 「관세정률법」, 「관세잠정조치법」, 「수징법」 등이 있음
  - 「관세정률법」 기본관세율, 과세표준, 감면, 환급 등에 대해 규정함
  - 「관세잠정조치법」은 국내산업보호 또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기본세율보다 관세율을 높이거나 낮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그 대상 품목과 관세율 등을 정함
  - 「수징법」은 수입품에 대한 내국소비세의 부과대상, 납부, 면제 등을 정함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및 검증은 경제산업성 소관의 「경제연계협정에 의거한 특정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함
  
- 일본의 관세 관련 법령에는 특송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내용은 없으며, 특송물품을 국제택배(国際宅配)라는 명칭으로 분류해 금액기준과 물품에 따라 일반 화물과 동일한 수입 통관 절차를 적용함<sup>95)</sup>
  - 관세법에는 우편물 통관에 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을 뿐 특송품 통관 관련 규정은 없음

## 나. 소액면세

- 개별 수입자에 의한 화물의 과세가격 합계액이 1만엔 이하인 경우 하나의 운송계약에 의해 운송되면 이를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관세,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가 면제됨
  - 「관세정률법」 제14조 제7호 또는 제8호(휴대품 및 이사회물의 무조건 면세)에 규정된 별송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이들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일본으로 입국하는 때에 당해 물품의 품명, 수량, 수입 예정시기와 예정지 및 적출지를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그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세관의 확인을 받아 세관장이 부득이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입국 후 6월 이내에 당해 물품을 수입해야 함
  - 세관은 동항의 신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 신고서에 그 신고를 한 것을 기재하고

95) 일본 관세국 홈페이지, <https://www.customs.go.jp/kaisei/hourei.htm>, 검색일자: 2023. 8. 2.

이를 환부하는 것으로 하며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그 수입신고 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된 신고서를 그 수입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함

- 단 1만엔 이하 소액화물의 경우에도 주류와 담배류에 대해서는 주세 및 담뱃세(담배 특별소비세)는 면세되지 않으며, 가죽가방, 팬티스타킹·타이츠, 장갑·신발, 스키신발, 니트의류 등은 개인적 사용에 제공되는 선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세되지 않음
- 10만엔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간이세율을 적용함<sup>96)</sup>

## 다. 특송물품의 통관절차

### 1) 일반 통관

- 일본 관세 관련 법령에는 특송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내용은 없으며, 특송물품은 일반 화물과 동일한 수입통관 절차를 거침
  - 수입통관 절차는 수입신고 → 심사 및 검사 → 관세 및 제세금 납부 → 수입허가 → 물품반출 순서임
- 수입신고는 수입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관한 세관 관서에서 NACCS(Nippon Automated Cargo and Port Consolidated System)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신고 및 납세 처리함<sup>97)</sup>
  - 수입신고인은 일반적으로 송장 상의 수취인이며 송장이 없는 경우 선하증권 또는 항공 화물 운송장 등에 기재된 수취인임
  - NACCS는 수출입 화물의 통관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전자통관시스템으로 해상, 항공, 항만시스템이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화물의 위험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96) 「관세정률법」 3조의3

97) 일본의 세관과 관할 지역은 다음의 링크 참조, 일본 관세국 홈페이지, <https://www.customs.go.jp/zeikan/organization.htm>, 검색일자: 2023. 8. 9.

선별할 수 있어 화물관리에도 활용되고 있음

- 수입신고 제출서류는 수입신고서, 필수서류와 기타 추가서류가 있음
  - 수입신고서는 화물의 품명, 수량, 가격, 기호, 번호, 원산지, 하역장소, 화물운송 선박 또는 항공편, 화물의 장치 장소, 기타 참고사항 등임
  - 필수서류는 송장, 선하증권 또는 해상화물 운송장, 보험료 명세서, 운임명세서, 포장명세서임
  - 그 외 화물의 종류에 따라 인증, 특혜 원산지증명서, 감면세 명세서 등이 필요함
  
- 수입화물의 심사는 간이심사, 서류심사, 화물검사로 구분됨
  - 간이심사는 전산상의 정보를 통해 수입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 제출이 불필요하나, 세관이 요청할 경우에는 수입신고일로부터 3일 내에 요청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서류심사의 경우 세관에서 품목분류, 관세율 등에 대해 확인하며 수입금지품목 해당 여부와 다른 법령에 의한 규제 준수 여부 등을 심사함
  - 화물검사의 경우 견본 검사, 일부 검사, 전수 검사로 분류되며 수입신고 내용과 화물의 일치성을 다음을 확인하여 진행됨
    - 수입금지 물품이 없는지 여부, 관세 관계 법령 이외의 법령에 의해 수입 승인이 필요한 경우, 원산지 표시가 정확한지 여부, 적절한 납세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
  
- 수입신고서 제출 후 관세는 납부세액신고에 의해 확정되며 과부족이 있는 경우 수정 신고, 경정 청구 등이 가능함
  - 세액은 납세의무자의 납부세액신고에 의해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을 따르나 휴대품 및 별송품, 20만엔 이하의 우편물 등의 경우는 부과세방식을 따름<sup>98)</sup>
  - 과소 신고 또는 무신고의 경우 가산세 제재 규정이 있으며 의도적인 거짓 신고 시 증가산금이 부과됨

98) 「관세법」 제6조의2(세액의 확정방식)

## 2) 특송 통관

- 특송물품의 화주는 수입자(수취인)로 수입물품 관련 가산세 발생 시 수입자가 세금을 부담하나 수입되는 물품은 통관업자(customs broker)가 관세 등 세금을 선납 후 통관함
- 특송물품은 특송업체가 수입신고 전 화물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세관 역시 필요에 따라 검사함
  - 세관 검사는 NACCS 분류에 따라 심사 생략, 서류심사, 화물검사로 구분되며 화물 검사의 경우 X-Ray 기계가 있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여 검사함
- 특송화물은 쿠리에(Courier)와 스몰 패키지 배송화물(Small Package Delivery)의 두 종류로 나누어짐
  - 쿠리에는 선하증권, 은행 간의 결제서류, 계약서, 설계도, 입찰서류 등의 상업서류와 통관수속이 간단한 서적류 등으로 잡화, 통관, 국제수송, 배송을 일체화함<sup>99)</sup>
    - 알기 쉬운 운영체계, 정시 및 지정날짜 내의 배송과 같은 서비스 특징을 가짐
  - 스몰 패키지 배송화물은 쿠리에보다 중량이 나가는 소형화물 서비스로 북미향 상품인 경우 250달러 미만, 그 외 지역인 경우 20만엔 미만을 대상으로 하며, 화물의 포장형식(높이+세로+가로)이 160센티미터(cm)를 초과할 수 없음<sup>100)</sup>
- 수입신고 과세가격이 20만엔 이하인 수입물품의 경우 간이통관 절차와 간이세율이 적용되며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불필요함<sup>101)</sup>
  - 특송품의 면세범위, 간이세율은 휴대품과 동일하게 적용됨
  - 「정률법」 제17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게재하는 수출입화물의 용기도 간이통

99) 송선욱,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특송물품 수입통관시스템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 연구』 제6권 제3호, 2004, p. 196.

100) 송선욱,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특송물품 수입통관시스템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 연구』 제6권 제3호, 2004, p. 196.

101) 「관세법 기본통달」 67-4-1(수입소액물품 간이통관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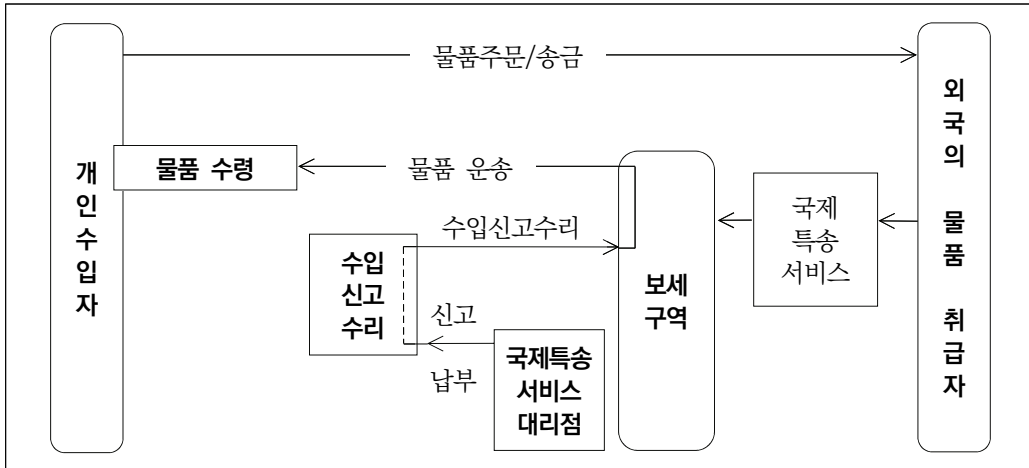
관 처리됨

- 소액관세율과 기타 협정세율을 비교하여 가장 낮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 간이 관세에는 국내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간이관세 외에 국내소비세 등을 부과함
- 소액물품 간이통관 특례신고 절차는 수입신고서에 소액화물 간이통관 처리를 표시해야 함<sup>102)</sup>
- 수입(인취)신고서의 품목란 각 란의 신고가격이 20만엔 이하의 경우에 해당하며 수입신고서에 ‘소액화물 간이통관 취급’으로 표시함
    - 단 수입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경우 및 「정률법」(제14조 및 제16조 제외) 또는 「잠정법」 규정에 의해 감면세 적용을 받는 경우는 제외함<sup>103)</sup>
  - 만약 화물 심사결과 간이통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해당수입 납세신고서 또는 수입(인취)신고서에 필요한 사항을 보충하고 일반수입 절차를 거치도록 함
- 수입물품의 품목당 과세가격이 20만엔 이하인 경우 화물 운송장(Air-Waybill) 또는 송장이 수입신고를 대신함
-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송장에 수입납세신고서라고 기재해 2부를 제출하며, 그중 1부는 신고자에게 교부함
  -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송장에 기재하는 내용은 과세가격, 세액, 수입화물 품명, 수량, 가격, 원산지, 수출자 정보, 화물 장치 위치 등의 정보 등임
- 일본에서는 국제택배화물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보세구역에 반입하며 수입신고는 지역 관할 세관에서 이뤄짐

102) 「관세법 기본통달」 67-4-2(소액물품 간이통관 처리 화물의 수입절차)

103) 「수입무역관리령」 제4조 제1항

[그림 Ⅲ-3] 개인물품 특송 수입 절차도



자료: 일본 관세국 홈페이지, <https://www.customs.go.jp/tsukan/kojinyunyu.htm>, 검색일자: 2023. 7. 21.

- 일본에서는 특송화물과 일반화물과의 구분이 없이 통관업자에 의한 세관의 허가가 필요함
  - 통관 업자(Customs Broker)의 허가요건은 자본금, 자격요건, 시설기준 등 경영의 기초가 확실하여야 하는 등의 제한을 하고 있으며, 장치물품 또한 세관 또는 특송업자가 설치한 창고 등 세관이 허가한 보세지역에 화물을 반입해야 함
- 무관세 수입품, 범죄와 관련된 수입품, 일본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수입품의 경우는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수입신고 시 일반 세율이 적용됨<sup>104)</sup>
  - 국가 산업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간이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물품은 다음과 같음
    - 우유, 크림 등
    - 혼합 콩, 곡물, 곡분 등
    - 땅콩과 곤약
    - 돼지고기 또는 소고기로 만든 제품

104) 일본 관세국 홈페이지, [https://www.customs.go.jp/english/c-answer\\_e/imtsukan/1001\\_e.htm](https://www.customs.go.jp/english/c-answer_e/imtsukan/1001_e.htm), 검색일자: 2023. 7. 21.

- 코코아로 만든 제품
- 곡물 또는 우유로 만든 제품
- 조리식품
- 정제염담배
- 석유
- 멘톨
- 조모피와 가죽, 가죽 제품
- 고치와 생사
- 니트 의류
- 신발류
- 모조장신구(비금속제품 제외)
- 가죽 시계줄, 가죽시트 부품

〈표 Ⅲ-5〉 간이세율 적용 품목

	품목	관세
1	주류 (1) 와인 (2) 소주 등의 증류주류 (3) 와인 콜러, 사케, 사이다 등	70엔/L 20엔/L 30엔/L
2	(1) 토마토 케첩, 기타 토마토 소스, 아이스크림과 기타 빙과 (2) 무두질 또는 마무리한 모피(드롭 스킨)와 모피제 의류, 의류 부속품과 기타 모피 제품	20%
3	(1) 커피 및 홍차(홍차 제외) (2) 젤라틴과 접착제 (3) 유연처리를 한 모피가죽(떨어뜨린 모피는 제외한다)	15%
4	(1) 동물(살아있는 동물만 해당) 요리에 사용되는 육류 및 육류 조각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 유제품, 가금류 알, 천연 꿀 및 기타 다른 범주에 속하지 않는 기타 동물성 식품 (2) 식용 야채, 뿌리줄기 및 괴경 (3) 식용 과일, 견과류, 감귤류 껍질 및 멜론 껍질	10%

〈표 Ⅲ-5〉의 계속

	품목	관세
4	(4) 생강(임시보관용으로만 가공) (5) 식용 해초 및 기타 조류 (6) 육류, 생선,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로 만든 제품 설탕 및 사탕 코코아 및 코코아로 만든 제품 곡물, 곡물 가루, 전분 또는 우유로 만든 제품 및 베이커리 제품 야채, 과일, 견과류 또는 야채 일부로 만든 제품 (7) 모든 유형의 준비된 식품 (8) 구연산 등 (9) 대나무 빗 (10) 직조 빨대, 에스파르토 또는 기타 땅의 재료, 바구니 세공품 및 줄무늬 공예품으로 만든 제품 (11) 실크 직물 (12) 기타 방적 및 제직용 식물성 섬유, 이러한 섬유로 만든 직물, 지사 및 지사로 만든 직물 (13) 니트 또는 코바늘로 뜨개질한 직물 (14) 의류 및 의류 액세서리(편물 또는 편물 제외)	10%
5	(1) 살아있는 나무, 그 밖의 식물, 땅속의 줄기나 뿌리 등, 절화와 장식용 잎 (2) 광물연료, 광유와 그 증류물, 역청질 물질 및 광물성 왁스 (3) 무기화학제품, 귀금속, 희토류금속, 방사성원소나 동위원소의 무기 또는 유기화합물 (4) 유기화학제품(구연산 등 제외) (5) 무두질 추출물, 염색 추출물, 탄닌 및 그 유도체, 염료, 안료, 기타 착색제, 페인트, 바니시, 퍼티, 기타 매스틱 및 잉크 정제유, 레지노이드, 조제향료 및 화장품 비누, 유기계면활성제, 세제, 조제윤활유, 합성왁스, 조제왁스, 광택제, 양초 등, 조형용 페이스트, 덴탈왁스 및 플라스틱계 치과치료용 조제재료 (6) 모든 유형의 화학 산업 제품 (7) 플라스틱 및 그 제품 (8) 모피가죽, 인조모피 및 이들의 제품 (9) 방적 또는 제직용 합침, 코팅, 피복 또는 적층 섬유로 만든 직물 및 방적 또는 제직용 산업용 섬유 제품 (10) 우산, 지팡이, 시트스틱, 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조제깃털, 솜털제품, 조화 및 인모제품 돌, 고약, 시멘트, 석면, 운모 및 이들로 만든 제품 (11) 유리 및 유리제품(유리구슬 제외) (12) 구리 및 구리 제품 니켈 및 니켈 제품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제품	3%

〈표 Ⅲ-5〉의 계속

	품목	관세
5	(13) 납 및 납 제품 (14) 아연 및 아연 제품 (15) 비금속, 시멘트 및 그 제품 비금속으로 만든 도구, 도구, 수저, 숟가락 및 포크 및 그 부분품 모든 유형의 비금속 제품 (16) 가구, 침구, 매트리스 등 (17) 장난감, 장난감, 스포츠 용품 및 그 부품 또는 액세서리	3%
6	(1) 동물성 제품(다른 범주에 속하는 품목 제외) (2) 소금, 유황, 황과 암석, 석회와 시멘트 (3) 의료용 젤 (4) 고무 및 그 제품 (5) 종이, 판지, 종이 펄프 및 종이 또는 판지로 만든 제품 (6) 세라믹 제품 (7) 철과 강철 (8) 철강 제품 (9) 주석 및 주석 제품	면세
7	상기 이외의 물품	5%

자료: 일본 관세국 홈페이지, www.customs.go.jp, 검색일자: 2023. 7. 21.

□ 단 소액 수입물품에 대한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다음과 같음<sup>105)</sup>

- 제04·01항 내지 제04·05항에 해당되는 물품
- 제07·13항에 해당되는 물품
- 제10류에 해당되는 물품
- 제11류에 해당되는 물품
- 제12·02항 및 제1212·99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
- 제1602·41호 내지 제1602·50호에 해당되는 물품
- 제1806·20호의 1 및 제1806·90호의 2의(1)에 해당되는 물품
- 제19·01항 및 제19·04 항에 해당되는 물품
- 제21·01항 및 제21·06항에 해당되는 물품(동표 제2106·90호의 2의(2)의 D의(b))

105) 「관세정률법」 제1조의3 법 제3조의3 제2항(소액 수입물품에 대한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물품)

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한다)

- 제24류에 해당되는 물품
- 제2501·00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
- 제27·09항 내지 제27·11항에 해당되는 물품
- 제2906·11호에 해당되는 물품
- 제41류에 해당되는 물품
- 제42류에 해당되는 물품
- 제50·01항 및 제50·02항에 해당되는 물품
- 제61류에 해당되는 물품
- 제64류에 해당되는 물품
- 제7117·90호에 해당되는 물품
- 제9113·90호의 1 및 2의(1)에 해당되는 물품
- 제9401·90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

### 3. 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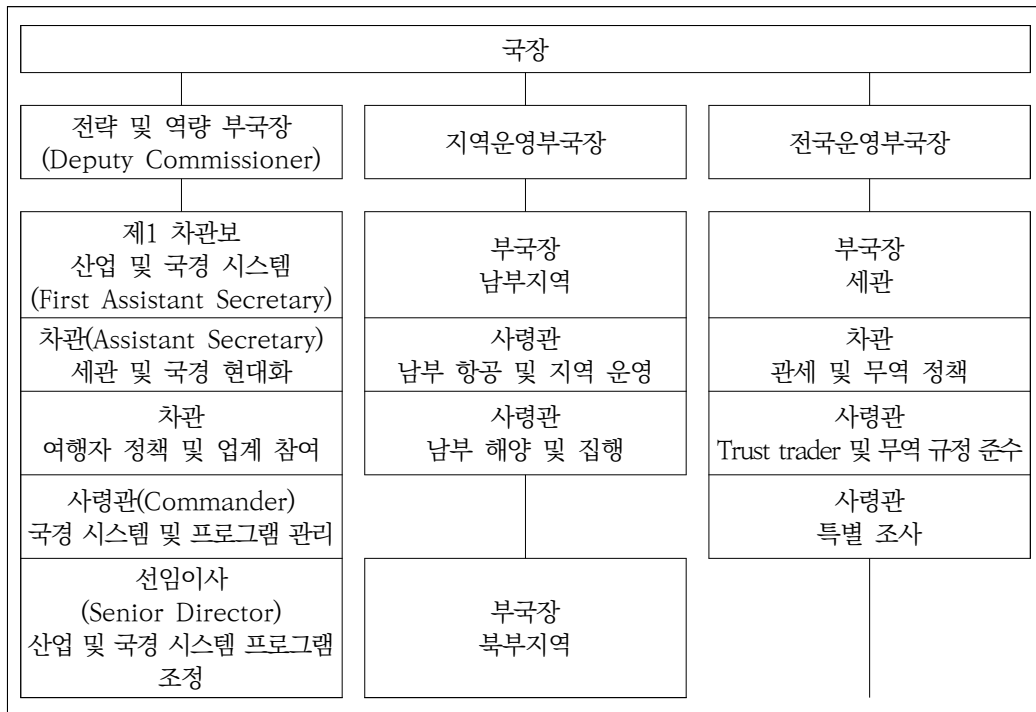
#### 가. 개요

##### 1) 담당기관

- 호주는 이민국경보호부(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 이하 DIBP)와 국경수비대(Australian Border Force; 이하 ABF)에서 통관 관련 행정을 관할하며 특송 물품의 통관은 ABF에서 담당하고 있음
- 과거 통관 관련 행정은 통관 중앙조직인 관세국경보호청(Australian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ervice)에서 담당했으나 2015년부터 이민국경보호부(DIBP)에 통합됨<sup>106)</sup>

- ABF는 수출입 물품의 통관, 수입품에 대한 관세 및 세금 징수, 수입 불법 복제 및 위조품, 국경 보호 등을 맡고 있으며 2015년 7월 1일에 설립된 이후로 내무부(Home Affairs)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음<sup>107)</sup>
  - 정부 수입을 보호하고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무역 집행 활동
  - 항공 또는 항구에서 승객 출입국 관리 및 화물 통관
  - 통관 센터(clearance centre)에서 우편물 통관
  - 해안선 경비. 불법 국경 활동 조사
  - 불법 범죄자의 위치 파악 및 구금 등

[그림 Ⅲ-4] ABF조직도



106) Homaffairs, <https://www.homeaffairs.gov.au/about-us-subsite/files/immigration-history.pdf>, 검색일자: 2023. 6. 26.

107) Homaffairs, <https://www.homeaffairs.gov.au/reports-and-pubs/Annualreports/home-affairs-annual-report-2020-21.pdf>, 검색일자: 2023. 6. 26.

[그림 Ⅲ-4]의 계속

	사령관 퀵스랜드 운영	부국장 구금 및 National Removals
부국장 (Assistana Commissioner) ABF 채용	총경 북부지역 운영	사령관 구금 운영
사령관 운영 준비		총경 구금 거버넌스(Detention Governance), 전략 및 표준
사령관 인력 관리	부국장 동부지역	총경 National Removals
사령관 ABF College	사령관 동부지역 무역 및 여행	수석 이사 구금 계약 관리
사령관 인력 역량	사령관 동부지역 집행 및 구금	
		사령관 해양 국경 사령부 및 주권 국경 작전
부국장 운영 조정 및 계획	부국장 서부지역	부사령관 주권 국경 작전 합동기관 특별대책본부
사령관 전술적 능력	사령관 서부지역 운영	사령관 해상국경수비대 (Maritime Border Command)
사령관 호주 국경 운영 센터	총경(SA, 남호주)	작전 책임자
사령관 국제 운영 및 조정		부사령관 해병대 배치 및 지원
사령관 국가 계획 및 타겟팅		총경 주권 국경 작전 합동기관 특별대책본부 운영 및 조정
총경 (Chief Superintendent) 연안보안 및 계획		
부국장 전략 및 거버넌스		
사령관 국경 전략		
사령관 항공 및 해양 역량		

[그림 Ⅲ-4]의 계속

차관 전략, 역량 및 투자
참모총장
최고 교육감 장관급, 거버넌스, 위험 및 보증

자료: Homeaffairs, <https://www.homeaffairs.gov.au/about-us-subsite/files/abf-org-structure.pdf>, 검색일자: 2023. 8. 14.

- ABF와 함께 농수산물의 검역, 세금 징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호주농림수산업부(DAFF, Biosecurity (Department of Agricultural, Fisheries and Forestry)에서 특송물품의 통관에 관여하고 있음<sup>108)</sup>
  - DAFF에서는 X-Ray로 수하물 및 화물을 검사함
  - 호주에서 수출입되는 농산물검사, 수입 식품 안전성, 수입 목재 및 종이 제품, 호주에 도착하는 상품, 사람, 그리고 선박의 해충과 질병 위험에 대해 검역을 담당하고 있음
  - 특히 소액화물에 대해 내무부 통합 화물 시스템(Integrated Cargo System; 이하 ICS)에서 자체평가통관(Self-Assessed Clearance; 이하 SAC)을 심사하고 문서 평가 및 물리적 검사에서 추가로 요구될 시 잠재적인 생물 보안 위험에 대해 검사함<sup>109)</sup>
  - 일부 제품의 경우 Biosecurity Import Condition(BICON) database에서 수입 조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SAC에 대한 특정 범주의 상품 및 평가에 대해서는 농산물 수입 관리 시스템(Agriculture Import Management System)에서 관리함

108) ABF, <https://www.abf.gov.au/buying-online/buying-online>, 검색일자: 2023. 6. 21.

109) DAFF, <https://www.agriculture.gov.au/biosecurity-trade/import/before/self-assessed-clearance-cargo#daff-page-main>, 검색일자: 2023. 6. 26.

## 2) 관련 법령

- 호주 특송물품의 통관 및 제세금 등과 관련된 법은 다음과 같음
  - 「관세법」 Customs Act 1901, 「관세행정법」 Customs Administration Act 1985, 「관세법 규정」 Customs Regulations 1926, 「수입금지물품규정」 Customs (Prohibited Imports) Regulations 1956, 「관세율법」 Customs Tariff Act 1995 등이 있음
  
- 소액면세 및 간이통관 절차는 관세법 규정(Customs Regulations 1926), 관세율법 (Customs Tariff Act 1995)에서 규정하고 있음
  - 「관세법 규정」 제29조 내지 제30조, 「관세율법」 Schedule 4 Items 26에서 소액 물품에 대한 면세를 규정하고 있음
  - 「관세법」 68(1)(e), 68(1)(f) 및 71AAAD 내지 71AAAT에서 소액물품에 대한 정의, 배제물품, SAC, 물품취급 권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관세법」 68(1)(e), 68(1)(f)에서는 1,000호주달러 혹은 이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물품에 대한 기본 통관절차 적용예외에 대해 간략히 규정하고 있음
    -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우편 이외의 방식으로 위탁한 위탁품에 포함된 것으로서 모든 것이 동일한 선박 또는 항공기로 호주로 운송되는 물품, 250호주달러 또는 규정된 기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가치의 물품에 대한 기본 통관절차 적용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 그 밖에 호주 세관에서는 통관에 대한 지침서를 발간하였으며 특송물품의 수입신고와 관련한 지침서는 다음과 같음
  - 수입신고절차 매뉴얼(Import Clearance Manual-Module 15 Import Declarations Overview)
  - 일반수입신고(Full Import Declarations(N10), Module 16.1)
  - 특송화물신고(Lodging Express Import Declarations Module 16.3)

- 호주는 「관세법」 및 관세 관련 규정상 특송물품의 통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다만 일반 수입절차상 특송물품의 수입 신고에 대한 지침서에서 일반 신고형식인 N10의 절차에 따른다고 설명하고 있음<sup>110)</sup>

## 나. 소액면세

### 1) 소액면세 기준

- 가치가 1,000호주달러 이하인 상품(담배, 담배 제품 및 주류 제외) 소액 물품으로 분류 하며 일반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관세, 세금 또는 요금은(duties, taxes or charges) 면제됨<sup>111)</sup>
  - 2018년 7월 1일부터 소비자가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 이러한 소액 상품의 해외 공급업체가 GST를 징수할 수 있음
  - 1,000호주달러 초과 물품은 정식 수입신고서를 작성하고 국경에서 관세, 세금 및 요금을 납부한 뒤 통관이 이루어짐<sup>112)</sup>
- 호주의 경우 소액 물품에 대해 간이통관을 적용하고 있으나 별도로 간이세율을 적용 하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보임

110) Australian Customs Service, 「16.3 LODGING EXPRESS IMPORT DECLARATIONS (N10)」, 2007. 2. 27.

111) ABF, <https://www.abf.gov.au/buying-online/buying-online>, 검색일자: 2023. 6. 21.

112) 그 밖에 통관처리수수료는 「통관처리수수료법(Import Processing Charges Act 2001)」에 따라 행정당국이 부과하는 수입물품의 통관처리를 위한 비용으로써 2015년 개정안(「Import Processing Charges Amendment Act 2015」)에 따라 2016년 1월부터 수입물품의 가격 구간별로 부과하고 있음.

「통관처리수수료법」 제5항 구간별 통관수수료(Amounts of import processing charges)에 따르면, 수입물품은 통관 처리처(해상, 항공/우편)와 수입물품의 가격 구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함 ABF, <https://www.abf.gov.au/importing-exporting-and-manufacturing/importing/cost-of-importing-goods/charges/import-processing-charge>, 검색일자: 2023. 6. 28. 참조

## 2) 소액면세 기준 배제 대상

- 호주는 관세율법(Customs Tariff Amendment Act 1995)에 따라 12개의 Schedule로 관세율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Schedule 4에서 총 15개 대분류 하위 57개 품목 군에 대해 관세감면을 규정하고 있음<sup>113)</sup>
  - 15개 분류는 과학 교육 또는 문화 관련 물품, 국제기구 및 외교관 등에 대한 물품, 개인물품, 국내로 반환되는 물품, 국외로 수출예정인 물품, 기부 또는 유산 관련 물품, 트로피·메달 등의 수상품 관련 물품, 소액물품, 장애인물품, 섬유·의류 또는 신발류, 운송수단, 로봇 또는 시제품, 제조 관련 물품, 석유관리 세금 면제품, 기타 잡화 등이 있음
  
- 「관세율법」 Schedule 4 Items 26에서 1,000.1호주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상품에 대한 면세를 규정하고 있으며 적용제의 대상은 다음과 같음<sup>114)</sup>
  - 담배, 담배 제품 또는 알코올음료
  - 호주 영토 밖에서 호주로 도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객 또는 승무원의 반입물품
  - 대량 주문의 일부가 1,000.01호주달러 미만의 가치 등
    - 대량주문(bulk order)은 함께 주문되어 두 개 이상의 배송으로 별도로 배송되는 상품을 의미함
    - Australian Customs Notice No. 2023/13에 따라 4월 1일부로 「관세율법」이 새롭게 발효되었으며 Item 26의 경우 2023년 6월 2일부터 해당 내용이 적용되고 있음<sup>115)</sup>

113) ABF, <https://www.abf.gov.au/importing-exporting-and-manufacturing/tariff-classification/current-tariff/schedule-4#miscellaneous>, 검색일자: 2023. 8. 9.

114) Customs By-law No. 2300079 <https://www.abf.gov.au/help-and-support-subsite/CustomsNotices/2023-13.pdf>, 검색일자: 2023. 8. 14.

115) ABF, <https://www.abf.gov.au/importing-exporting-and-manufacturing/tariff-classification/current-tariff/schedule-4-by-law>, 2023. 7. 6.

다. 특송물품의 통관절차

- 호주의 관세 관련 규정 상 특송물품에 대해 별도의 통관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다만 일반통관절차 및 간이 통관절차가 수입 금액에 따라 적용되고 있음
- 1,000호주달러 초과인 물품은 일반적인 수입신고 Nature10(이하 N10), 창고보관의 경우 Nature20, 창고에서 보관하기 위해 창고보관으로 신고 후 국내 소비를 위해 수입통관을 진행할 시 Nature30, 하나의 화물에 국내 소비용과 창고 보관용이 혼재되어 있을 시 Nature10/20을 사용함
- 1,000호주달러 이하의 경우 SAC으로 간이 통관을 진행할 수 있으며 간이통관은 약식(Short)신고 및 정식(Long format)신고로 분류될 수 있음
  - 관세감면이나 양허세율 적용, 별도의 허가 또는 승인 물품 등에 대해서는 정식신고를 그 외의 경우 약식신고를 제출해야 함

〈표 Ⅲ-6〉 수입신고의 종류 및 내용

수입신고 종류		내용
간이신고 (SAC)	Short format SAC	해상 또는 항공화물 가격이 1,000호주달러 이하인 경우 (수입 허가가 필요한 화물을 이용할 수 없음)
	Long format SAC	해상 또는 항공화물 가격이 1,000호주달러 이하인 경우로 관세 감면 및 양허세율의 적용,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경우, 관·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
Nature10(N10)		화물가격이 1,000호주달러를 초과하며 호주 국내 소비를 위해 수입되는 경우(일반적 수입신고)
Nature20(N20)		화물가격이 1,000호주달러를 초과하며 수입통관 전 창고에서 보관하는 경우
Nature30(N30)		화물가격이 1,000호주달러를 초과하며 창고에서 보관하기 위해 N20으로 신고 후 국내 소비를 위해 수입통관 하려는 경우
Nature10/20 (N10/20)		하나의 화물에 국내 소비용과 창고 보관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22 수출기업 맞춤형 조사』, 2022, p. 42.

## 1) 일반 통관

- 호주는 수입통관은 ABN 발급, 수입요건 서류 구비 등 사전준비, 수입신고,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 관세납부, 신고수리 및 물품 반출의 절차로 통관이 이루어짐
- 1,000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국내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사 또는 수입자가 N10를 통해 신고해야 함
  - 수입품, 수입업자에 관한 세부 사항, 상품이 운송되는 방법, 품목분류 및 과세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함
  - 통합 화물 시스템(ICS)에 제출된 경우, 또는 ABF 카운터에 수입신고를 제출할 수 있음
- 호주 국내로 물품을 반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야 함
  - 소유자의 신분 증명(Evidence of Identity, EOI) 제공
  - 세관 클라이언트 식별자(Customs Client Identifie, CCID)/호주사업자 번호 (ABN)
  - 양식 B319를 사용하여 ICS에 클라이언트로 등록
    - 호주 통관화물관리시스템인 ICS(Integrated Cargo System)를 통해 전자적으로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수입자는 Form B319(Client Registration Form)을 작성하여 ICS에 Client로 등록해야 함
  - 송장(Con Note-Consignment Note/AWB-Airway Bill/BL-Bill of Lading)
  - 거래명세서(Commercial Invoice/Packing List)
  - 포장증명서(해상 운송 경우 필요-Packing Declaration)
  - 그 외 세관/검역에서 요구하는 추가서류
- 수입 신고서는 화물을 실은 선박 또는 항공기가 호주의 항구 또는 공항에 처음 도착하기 전에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음

- 화물의 상태는 내무부 및 농림부의 통제에서 반출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통합 화물 시스템(ICS) 내에서 누적적으로 평가되며 화물 및 관련 문서와 관련된 일련의 조건에 의해 결정됨
  - 화물 상태는 화물 보고서 및 관련 문서의 수정 사항을 포함하여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다시 계산됨
  
- 화물 상태 정보는 Customs Interactive를 통해 제공되며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전자 메시지로도 전송됨
  
- X레이 또는 기타 장비를 통한 검사 또는 제품에 대한 물리적인 검사를 수행함<sup>116)</sup>
  - 세관 및 국경 보호국은 필요에 따라 상품의 특성 또는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품을 열고, 검사하고, 샘플을 채취하고,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음
  
- ICS에 수입신고가 접수되면 내용에 따라 녹색신고, 황색신고 적색신고로 분류되어 처리됨<sup>117)</sup>
  - 녹색 신고로 분류될 경우 추가적인 검사 없이 통관이 가능하나 품목 분류 검역 정보 가격이 송품장 내용과 다른 경우 적색신고로 분류되어 추가적인 검사가 이루어짐
    - 녹색신고의 경우 추가적인 검사 없이 통관이 가능한 품목으로 수입자 혹은 대행업체가 관세 및 제세를 납부하면 수입신고가 수리됨
    - 적색신고의 경우 품목분류의 오류나 검역 대상 물품이 적절한 검역을 받지 않은 경우 혹은, 가격이 송품장 내용과 다른 경우 등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한 품목으로 정밀한, 검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짐
    - 황색신고의 경우 위장 수입물품이나 관세 포탈의 우려가 있는 물품 마약 및 수입 금지 또는 제한, 물품 혹은 이와 같은 경우로 의심되는 경우
  
- 수입신고서검토 및 지역사회 보호(Community protection)에 대한 질문에 대해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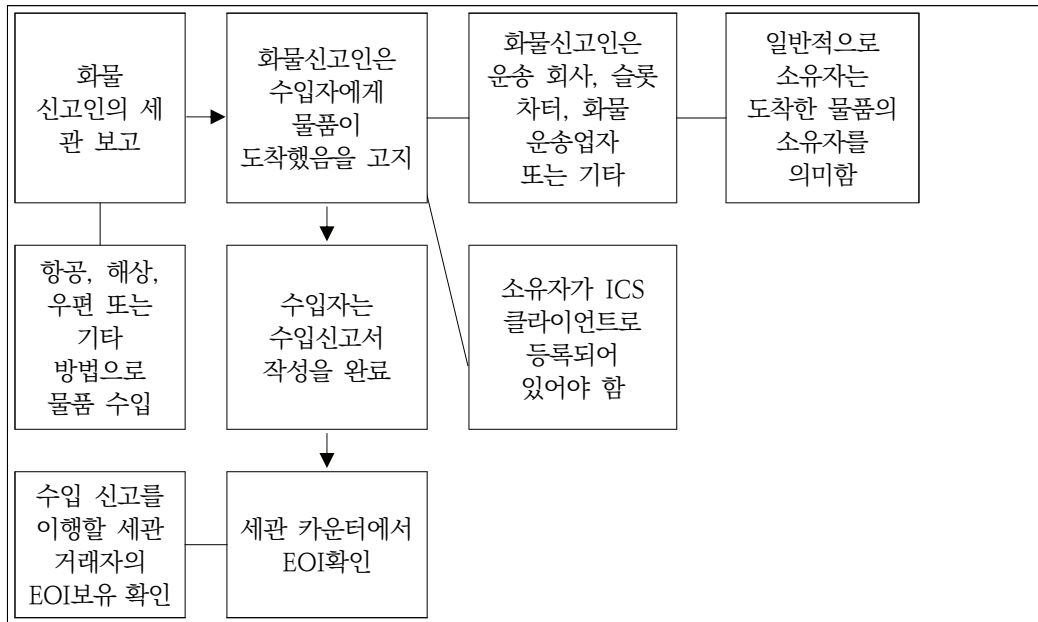
116) ABF, 「Documentary Import Declaration Comprehensive Guide」, 2013. 7., p. 5.

117)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22 수출기업 맞춤형 조사」, 2022, p. 43.

과할 시 수입신고서의 처리(lodge)가 완료되며 수입신고서 제출일과 동일한 날짜에 완료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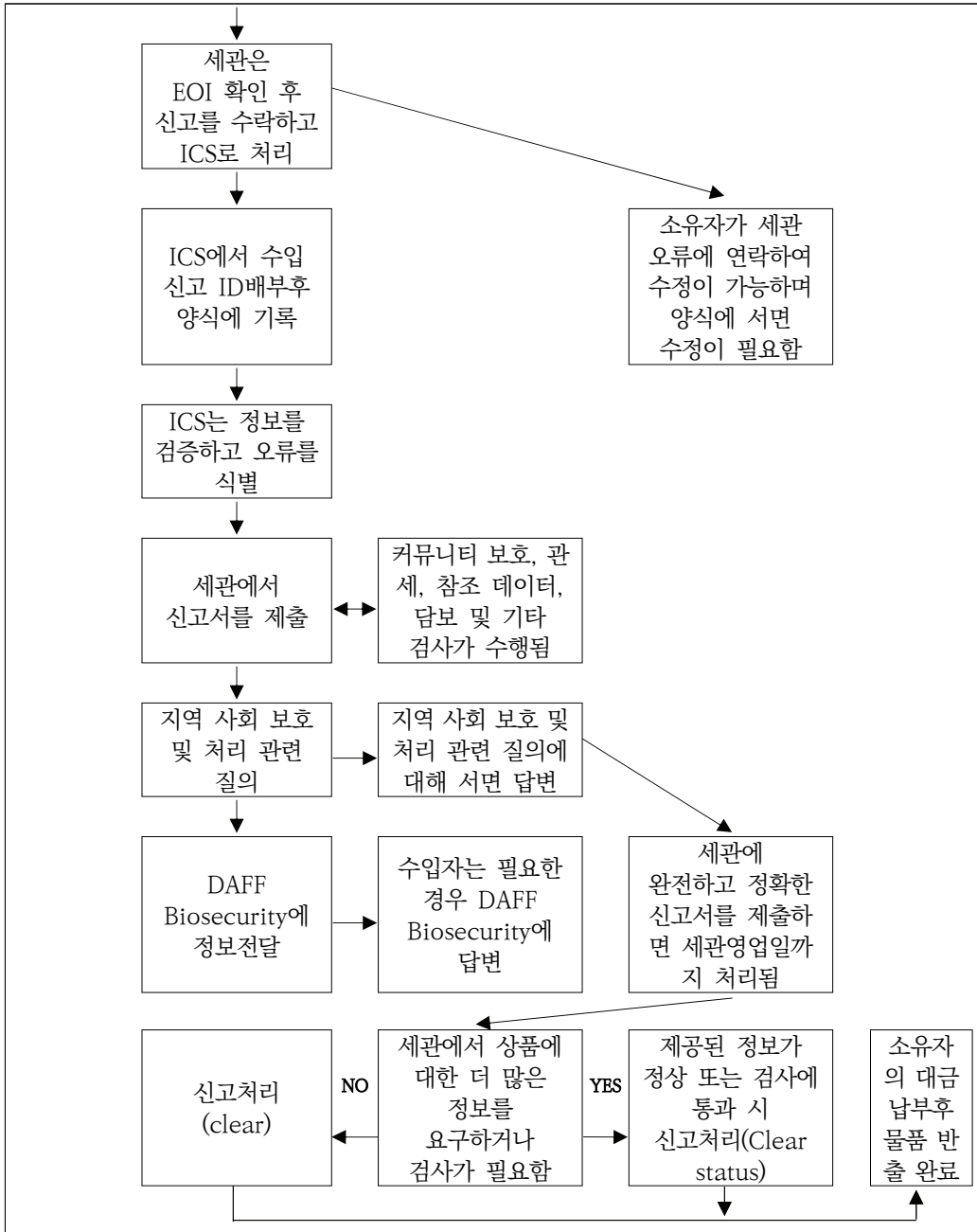
- 수입신고서 제출일과 동일한 날에 신고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서의 제출부터 다시 진행되어야 함
- 수입신고 상태는 불완전(Incomplete), 제출(Submitted), 처리(Clear), 보류(Held), 확정(Finalised), 철회(Withdrawn)로 분류되며 처리 단계의 경우 관세를 비롯한 제세금이 납부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납부 후 확정단계에서 반출이 가능함
- 수입자는 관세를 비롯한 제세금을 세관에 납부한 후 수입 물품을 인수할 수 있으며 통관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된 경우 수입신고물품 반출까지는 최소 시간 공휴일 제외 15일이 소요되며 물품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sup>118)</sup>

[그림 III-5] 호주의 수입신고절차



118)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22 수출기업 맞춤형 조사』, 2022, p. 44.

[그림 III-5]의 계속



자료: ABF, 「Documentary Import Declaration Comprehensive Guide」, 2013. 7., p. 32.

- ATT(Australian Trusted Trader)의 경우 Duty Deferral Plus를 통해 관세를 비롯한 제세금의 납부를 연기할 수 있음
  - 관세 및 기타 세금과 요금의 지불을 월별 지불로 연기할 수 있으며 통합하여 납부하는 물품을 수입한 달의 다음 달 21일에 납부가 가능함
  - 예를 들어 3월에 수입된 모든 해당 상품에 대한 관세는 4월 21일 또는 다음 은행 영업일에 계좌에서 인출될 수 있도록 함
  - 관세,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 세금의 지불을 연기할 수 있음
  - 송장 처리로 인해 이전 달에 관세납부를 연기한 모든 일반수입신고 및 와 SAC는 지급이 예정된 달의 16일과 21일 사이에 접속이 중단되어 이 기간 동안에는 일반 수입신고와 SAC에 수정 또는 철회가 불가능함
  - 데이터가 올바르게 보고되지 않은 경우 화물의 출고가 지연될 수 있음
  
- 위탁품(consignment)에 다른 사람(예: 친구 또는 친척)을 위한 물품 또는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신고 또는 평가 금액이 1,000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수입신고에 따른 제세금 및 요금은 해당 소포에 포함된 모든 상품에 대해 지불해야 함
  - 위탁은 위탁자에 의해 일반적으로 개시될 수 있지만(예를 들어 요청하지 않은 판촉물을 보내는 회사), 대부분의 상업적 위탁은 수탁자의 주문을 받아 이루어짐
  - 단일 주문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선박이나 항공기로 호주로 운송되며 여러 패키지는 '해당 패키지가 동일한 주문의 일부'(상품이 다음 날짜에 별도의 패키지로 도착하더라도)인 것으로 알려진 단일 위탁품에 해당함<sup>119)</sup>
    - ABF가 위탁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 ABF 담당자는 추가 정보 또는 지원 문서(예: 주문 기록, 송장, 포장 목록)를 검색하여 물품이 하나의 위탁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관세법」 제68조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일반적인 수입 또는 창고 신고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68조(1)(e)와 (f)는 제68조가 1,000호주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가치

119) ABF, Australian Customs Notice No. 2021/01 (Definition of 'consignment' for the purposes of section 68 of the Customs Act 1901), 2020. 12. 20.

- 를 가진 위탁물에 포함된 상품(규정된 상품 제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이에 따라 위탁품이 다른 사람을 위해 수입되었을 때에도 별도의 항목으로 나누거나 가치를 나누어 평가하지 않음
- 분할 위탁품(split consignment)은 하나 이상의 소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 이상의 소포가 다른 화물과 별도로 호주 국경에 반입됨
    - 소포가 도착하는 시간은 다르지만 「관세법」 제68조의 목적상 하나의 화물로 간주되며 분할 화물이 2개 이상의 개별 화물로 잘못 신고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ABF는 수하인으로부터 추가 정보 또는 증빙 문서(예: 주문 기록, 송장, 포장 목록)를 요구할 수 있음
  - 호주의 안전 및 기술 표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스 및 전기 제품을 비롯하여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 바비큐나 개인 손질 용품과 같은 일부 상품들은 호주 기준에 맞게 변형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함<sup>120)</sup>
    - 해적판 또는 모조품을 구입하는 경우 결함이 있는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며 심각한 범죄 행위 및 피해를 수반할 수 있는 불법 거래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호주로의 수입이 금지됨
    - 경우에 따라 ABF직원이 수입 불법 복제품 및 위조품을 압수할 수 있으며 모조품을 수입 및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기소될 수 있음

## 2) 특송 통관(SAC)

- 해상 또는 항공 화물을 통해 호주에 도착하는 1,000호주달러 이하의 수입품은 호주 세관 국경 보호 서비스(ACBPS)에 자체 평가 통관(SAC) 신고를 해야하며 신고는 전

120) ABF, <https://www.abf.gov.au/buying-online/buying-online>, 검색일자: 2023. 6. 21.

자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sup>121)</sup>

- 물품이 국제 우편을 통해 개인 물품으로 또는 까르네로 수입될 시 SAC으로 신고가 불가능함
  - 상품의 가치가 1,000호주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것 또는 ACBPS 또는 농업 생물 보안 부서에 검역 여부에 대해 보고해야 함
  - SAC 신고서는 전자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며 서류로 제출할 수 없음<sup>122)</sup>
  - 세관은 SAC에 대한 권고를 신고자에게 전자적으로 전달하며 그 후 「관세법」 제71조에 따라 상품을 국내소비가 가능하도록 권한을 이양함<sup>123)</sup>
  - 특정 관세 등이 미납되는 동안 집하인은 물품을 인도할 수 없으며<sup>124)</sup> 물품이 제 71AAAH조(제71AAAK조 참조)에 따른 지시에 따라 처리되거나 담당자가 추가 정보를 확인하는 동안 물품을 취급할 권한이 부여될 수 없음
- ACBPS에 제출된 대부분의 SAC 신고는 화물 신고인(운송업체 또는 화물 운송업자)이 항공 화물에 대한 화물 신고를 완료하면 종료되는 Cargo reported SAC 형태로 이루어지나 그렇지 못한 경우 화주가 직접 신고해야 함<sup>125)</sup>
- 관세사 또는 기타 서비스 제공자를 고용하여 수수료 지급 후 SAC 신고를 제출할 수 있음
  - 화주가 통합 화물 시스템(ICS)을 사용하여 직접 SAC 신고를 제출하는 경우 디지털 인증서를 보유해야 함
  - SAC 신고는 수입자 또는 관세사에 의해 진행되어 세관에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음
  - 세관원(ACBPS officer)은 화주를 대신하여 SAC 신고를 이행할 수 없음
- 화물신고인은 ABF가 호주에 도착하기 전에 화물을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Cargo

121) ABF, SELF-ASSESSED CLEARANCE (SAC) DECLARATIONS, 2015. 2.

122) 「관세법」 71AAAF(2)

123) 「관세법」 제71AAAG조, 71AAAI조

124) 「관세법」 제71AAAG조, 71AAAI조

125) ABF, SELF-ASSESSED CLEARANCE (SAC) DECLARATIONS, 2015. 2.

Report를 작성하면 1,000호주달러 이하의 가치를 가진 화물에 대한 Cargo Report SAC를 할 수 있음<sup>126)</sup>

- 화물신고자가 해당 신고를 할 경우 화주는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
  - 대부분의 SAC 선언은 화물 보고서와 함께 이루어지나<sup>127)</sup>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운송업체 또는 화물 운송업체가(carrier or freight forwarder) Cargo Report SAC 신고를 하지 않았을 시 해당 신고 여부에 화주에 통지해야 함
  - SAC Thesaurus<sup>128)</sup> 의 기재로 물품이 술, 담배 또는 영연방법에 따른 제한이나 허가의 대상 아님을 확인해야 함
    - SAC Thesaurus는 화물 신고인이 상품 설명과 교차 확인해야 하는 단어 목록으로 화물에 대한 설명에 SAC Thesaurus에 단어가 포함된 경우 화물 신고자는 Cargo Report SAC 신고를 할 수 없음
  - 그 밖에 호주 농림 수산 임업부 DAWE 검역대상이 아님을 확인해야 함
- 다음의 경우 최소한의 정보로 약식 SAC 신고 시 통관이 이루어지며 약식 SAC으로 담배, 담배 제품 및 알코올음료에 대한 세금과 GST를 납부할 수 있음<sup>129)</sup>
- 디지털 인증서가 있고 ICS에 등록된 사용자는 누구나 약식 SAC신고를 할 수 있음
    - 수입업체, SAC 신고 서비스 제공업체 또는 관세사가 약식 SAC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임
  - 약식 SAC을 위해서는 수입자 정보(예: 회사 이름, ABN 등), 상품에 대한 설명, Cargo Report와 SAC의 교차정보가 제출되어야 함
  - 물품에 담배, 담배 제품 또는 알코올음료가 포함된 경우 제·세금 계산을 위해품목 분류, 수량, 가액, 운송비, 보험료 등에 대한 정보가 제출되어야 함

126) ABF, <https://www.abf.gov.au/importing-exporting-and-manufacturing/importing/how-to-import/import-declaration>, 검색일자: 2023. 7. 3.

127) 「관세법」 71AAAF(3)

128) SAC Thesaurus, <https://www.abf.gov.au/imports/files/fact-sheets/self-assessed-clearance-declaration-thesaurus.pdf>, 검색일자: 2023. 7. 3.

129) ABF, <https://www.abf.gov.au/importing-exporting-and-manufacturing/importing/how-to-import/import-declaration>, 검색일자: 2023. 7. 3.

- 반입 금지 또는 제한 물품은 DAWE 또는 ABF의 검역 대상의 경우 해당 요청 사유 및 검역 검사 위치(검역 고려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정부부처 또는 기관의 허가를 ABF에 제출해야 함
- 다음의 경우 정식 SAC신고 시 통관이 신속해짐<sup>130)</sup>
  - 면세 또는 양허가 적용대상 품목
  - 허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품목
  - 물품이 대량 탁송물품이거나 다른 상업적 이유로 관세 및 GST가 부과되는 품목

## 4. 필리핀

### 가. 개요

#### 1) 담당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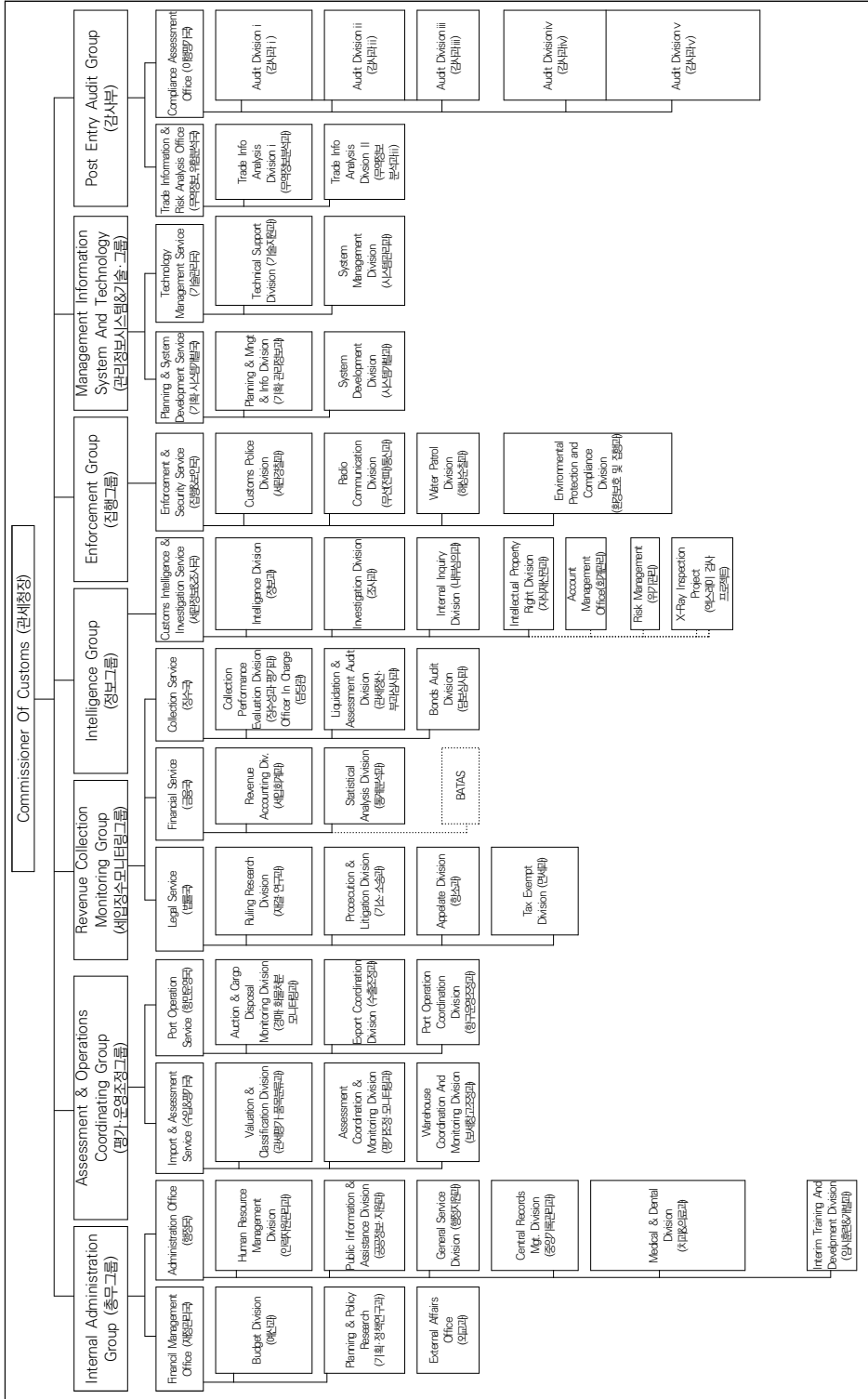
- 필리핀 관세청은 재무부 외청(agency)으로 국경 통제 강화, 무역 원활화 강화, 합법적 수입 징수 개선 세계 최고 수준의 신뢰할 수 있는 현대화된 세관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sup>131)</sup>
  - 필리핀 관세행정 상부조직은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로서 필리핀 관세청(Bureau of Customs)이 속해있는 재무부 산하 중앙행정기관(Agency) 필리핀 관세율과 관세법을 집행하는 재무부 산하 독립외청(Agency)의 중앙행정기관임
  - 2023년 필리핀 관세청은 세관 절차의 디지털화, 주요 목표의 달성, 절차의 간소화 및 안전한 거래 촉진, 모든 형태의 밀수 억제, 직원복지 및 개발에 중점을 두는 5가지 프로그램을 선정하였음

130) ABF, <https://www.abf.gov.au/importing-exporting-and-manufacturing/importing/how-to-import/import-declaration>, 검색일자: 2023. 7. 3.

131) 필리핀 관세청, <https://customs.gov.ph/mission-and-vision/>, 검색일자: 2023. 7. 26.

- 세금 징수 모니터링 그룹(Revenue Collection Monitoring Group)에서 세입 징수 회계 담당, 세관의 법령 행정, 세입 징수 통계 정보와 분석 등을 담당하고 있음
  - 산하에 법률국(Legal Service), 금융국(Financial Service), 징수국(Collection Service)
  
- Assessment & Operations Coordinating Group(평가·운영조정그룹) 산하에 수입·평가국(Import & Assessment Service), 항만운영국(Port Operations Service)이 소속됨
  - 수입·평가국(Import & Assessment Service)은 관세평가·품목분류과(Valuation & Classification Division), 평가조정·모니터링과(Assessment Coordination & Monitoring Division), 보세창고조정과(Warehouse Coordination Division)로 구성됨
  
- 그 밖에 정보그룹(Intelligence Group) 산하에 정보·조사국(Intelligence & Investigation Service)이 소속되어 있으며 관세와 경제 활동 관련 지식 정보 수집, 내부 문의와 조사 실행 등을 담당함
  - 관리정보시스템&기술·그룹(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And Technology) 산하에 기획·시스템개발국(Planning & System Development Service) 기술관리국(Technology Management Service)에서 정보관리, 시스템관리 및 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감사부(Post Entry Audit Group) 산하에 무역정보·위험분석국(Trade Information & Risk Analysis Office) 및 이행평가국(Compliance Assessment Office)이 소속됨

[그림 III -6] 필리핀 관세청 조직도



자료: 필리핀관세청, <https://customs.gov.ph/organizational-chart/organizational-chart-2/>, 검색일자: 2023. 8. 17.

## 2) 관련법령

- 필리핀 재무부(DOF)는 교역촉진, 행정절차 간소화, 부정부패 퇴치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세관·관세법 개정안인 세관현대화·관세법(Customs Modernization and Tariff Act, RA 10863)을 제정하였음
  - 해당 법안은 2016년 5월 30일 최종 승인되었고 2016년 6월 16일 발효되었음<sup>132)</sup>
- 해당 법은 세관 모든 절차 자동화를 비롯하여 약식신고 허가, 신고기간 변경, 우수공인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sup>133)</sup>
  - 세관신고, 평가, 납세, 물품 인도 등 수입 및 수출의 모든 절차에 자동화 시스템 도입
  - 자동화실시로 세관보세창고의 물품의 이동에 대한 모니터링 가능
  - 특정 소비 제품들의 약식 신고(informal entry clearance)를 허가함
    - 5만필리핀페소 이하의 본선인도(Free on Board) 또는 운송인인도조건(Free Carrier Arrangement)에 해당되는 상업성 제품 및 소량의 개인소유 제품
  - 세관신고 기간을 연장하였음
    - 관세청 통지 15일 이내에 세관신고를 진행할 수 있고 15일 추가 연장이 가능함 (개정 전 30일)
    - 평가결과 고지 15일 이내에 관세 납부를 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 가능하며 관세 납부 후 30일 내 물품 수령 가능(개정 전 15일 내로 제한하였음)
  - 화물 검사 방법의 투명성을 확대하였음
    - 검사 시 화물 소유자 또는 대표자 동행 가능
    - 엑스레이 등 비 해체(non-intrusive) 기술 도입
    - 물리적 검사는 특이사항이 있거나 요청 시에만 실시

132)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https://overseas.mofa.go.kr/ph-ko/brd/m\\_3645/view.do?seq=1246977](https://overseas.mofa.go.kr/ph-ko/brd/m_3645/view.do?seq=1246977), 검색일자: 2023. 8. 23.

133)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https://overseas.mofa.go.kr/ph-ko/brd/m\\_3645/view.do?seq=1229056](https://overseas.mofa.go.kr/ph-ko/brd/m_3645/view.do?seq=1229056), 검색일자: 2023. 8. 23.

- 특송과 관련해서는 Customs Administrative Order(CAO) 05-2020(Customs Clearance Procedures on Express Shipment)에서 항공 특송화물에 대한 통관절차를 설명하고 있음
  - CAO는 관세 현대화 및 관세법(CMTA)이라고도 하는 법 제10863호의 제439조, 제4장, 제4편 및 기타 관련 조항의 이행을 위해 공표되었음

## 나. 소액면세

- CMTA<sup>134)</sup>에 따라 FOB<sup>135)</sup> 또는 FCA<sup>136)</sup> 값이 1만필리핀페소(Php10,000.00) 이하인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 재무장관(Secretary of Finance)은 해당 법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본 법률의 발효 후 3년마다 최소치를 조정해야 함
  - 해당 내용은 무역원활화 및 관세행정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정하게 되었음
  - 해당 물품은 비공식 통관절차의 적용을 받음(informal entry)
- 소액물품 배제대상은 다음과 같음<sup>137)</sup>
  - ‘without commercial value’, ‘no commercial value’, ‘for customs purposes’의 문구로 신고된 물품
  - 승객이 반입하는 담배, 주류가 소액의 기준에서 벗어난 경우
  - 조건부 면세, 보세공장용 또는 환적 또는 자유무역지역에 조건적 반입을 위해 수입되는 물품
  - 수입금지 및 제한 물품

134) 「Customs Modernization and Tariff Act」 제423조

135) Free On Board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함.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이전되며, 매수인은 그러한 시점 이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함.

136) Free Carrier 지정장소 운송인 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 통관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Carrier)에게 인도한다는 것을 의미함. 인도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 및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며 조달청에서 많이 사용하는 조건임.

137) Customs Administrative Order(CAO) 02-2016 5.1-5.5.

- 개인용 혹은 규정의 한도 범위에 있는 물품을 제외하고 규제당국에 의한 조건 또는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하는 물품
- 5만필리핀페소(Php50,000.00) 미만의 물품은 제세금이 부과되거나 일정금액의 보증이 있다면 즉시반출이 비공식 통관절차(informal entry)를 적용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sup>138)</sup>
- 고가(High value)의 물품 기준은 5만필리핀페소((Php50,000.00)로 해당 금액 이상의 물품은 일반통관(formal entry)을 적용함
- 필리핀의 경우 소액 물품에 대해 간이통관을 적용하고 있으나 별도로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다. 특송물품의 통관절차

##### 1) 일반 통관

- 고가의 물품(High-Value Shipments)은 FOB 5만필리핀페소(Php50,000.00) 이상인 발송물로서 각 물품은 화물 통관 시스템을 통해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함<sup>139)</sup>
- 필리핀의 수입통관은 수입신고 → 검사 및 검역 → 관세 납부 → 물품 반출의 일반적인 순서로 진행되며 수출 전 현지 수입업체는 수입면허(CAS)를 취득해야 함<sup>140)</sup>
- 수입자는 관세청에 수입자유 상품, 수입제한 및 규제품목 및 수입허가여부를 확인하여 수입허가를 획득해야 함

138) 「Customs Modernization and Tariff Act」 제400조 내지 제402조

139) Customs Administrative Order(CAO) 05-2020 section 8

140)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ATI, 2020 농식품 수출국가정보 필리핀, 2020, p. 164.

- 수입자는 세관국(BOC) 및 내부 수입국(BIR)에 등록되어야 함
- 단일통관창구(NSW)를 통해 수입을 신고하고 제반 서류를 온라인 시스템으로 일괄적으로 제출 가능함<sup>141)</sup>
  - 필리핀 관세청에서는 통관을 위해서는 통상 10개의 서류가 필요하며 만약 요청하는 서류가 100%가 준비되지 못하거나 경미한 하자가 있더라도 통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음
- 상품의 구체적인 가치는 공식 영수증, 구매 주문서, 은행 송금 또는 이에 준하는 지불 증빙 서류로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세관은 국가 가치 확인 시스템(NVVS, National Value Verification System)에 기초하여 물품 가치를 산정함
- 물품의 위험도에 따라 슈퍼그린라인(Super Green Lane), 그린라인(Green Lane), 레드라인(Red Lane)으로 분류되어 검사 및 검역이 진행됨<sup>142)</sup>
  - 위험은(Red Lane) 서류심사 및 화물심사 모두가 이루어지고 중위험(Yellow Lane)은 서류심사 대상이며, 저위험(Green Lane) 서류 및 화물검사가 없으며 초저위험(Super Green Lane)은 관세 납부 후 바로 통관(우수인증기업)으로 통관되며 분류의 기준은 수입품목, 수입자의 과거실적 등임
  - 관세는 필리핀 정부가 지정한 공인 은행에서만 납부 가능하며 필요시 상품의 샘플 검사가 시행될 수 있음
- 수입 및 수출이 금지된 물품은 다음과 같음<sup>143)</sup>
  - 필리핀 정부에 대한 반역, 반란, 반란, 폭동, 폭동 또는 필리핀 정부에 대한 강제적인 저항을 옹호하거나 선동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서면, 불법 낙태 관련 물품, 외설적이거나 부도덕한 성격의 필름, 사진 등

141)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ATI, 2020 농식품 수출국가정보 필리핀, 2020, p. 164.

142)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ATI, 2020 농식품 수출국가정보 필리핀, 2020, p. 164.

143) CUSTOMS ADMINISTRATIVE ORDER (CAO) 05-2020 3.16.

- 전체 또는 일부가 금, 은 또는 기타 귀금속 또는 합금으로 제조된 모든 상품 및 스템프, 브랜드 또는 마크가 금속 또는 합금의 실제적인 품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는 불량 또는 부정표시 식품 또는 사람이 섭취하는 상품 또는 부정 또는 부정표시 의약품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등
- 규제 상품(Regulated Goods) 수입 및 수출은 규제 대상이며 수입 또는 수출 전에 필요한 허가, 면허 및 기타 요구 사항을 확보한 후에만 허용되는 상품을 의미함<sup>144)</sup>
    - 관련 법률 또는 규정에 규정된 경우 물품 도착 후부터 세관에서 반출 전 요구 사항을 제출하는 것이 허용됨
    - 제한 물품(Restricted Goods)은 법이나 규정에 의해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입이 금지된 다음의 물품으로 무기, 폭발물, 마약, 위험약품, 독성 물질 및 유해 및 핵 폐기물 등
  - 관세는 필리핀 정부가 지정한 공인 은행에서만 납부 가능하며 필요시 상품의 샘플검사가 시행될 수 있음<sup>145)</sup>
    - 과세 가격은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 관세와 더불어 부가세, 특별소비세, 물품세 등을 부과 신규 반입 품목의 경우 관행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함
    - 검사 등 통관과정 상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물품 반출을 허가함

## 2) 특송 통관

- E-IFCM(Electronic Inward Foreign Cargo Manifest)는 화물이 통관 항에 도착할 때까지 화물 정보를 미리 전자적으로 관리국에 전달하는 것을 의미함<sup>146)</sup>
  - 관련된 관련 통계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생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 통신 기술(ICT)의 사용을 극대화함

144) CUSTOMS ADMINISTRATIVE ORDER (CAO) 05-2020 3.14, 3.15.

145)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ATI, 2020 농식품 수출국가정보 필리핀, 2020, p. 165.

146) Customs Administrative Order(CAO) 05-2020 Article 3.4.

- 특급 배송은 일반적으로 AECO(Air Express Cargo Operator)에 위탁된 항공 운송장(MAWB)에 따라 배송되는 정시 배송 약속이 있는 방문 서비스 계약에 따라 특성상 시간에 민감한 상품의 통합 항공 배송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화물로 운송되는 특급 발송이 포함됨<sup>147)</sup>
- 즉시 반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특송 물품은 ① 상업적 가치가 없는 것 ② 최소금액 ③ 소액, 과세물품 ④ 일반물품의 네 가지 범주로 구분되어 통관이 이루어짐<sup>148)</sup>
- 상업적 가치가 없는 물품은 업무 차, 사내 간 또는 개인(Business, Inter-office, or Personal, BIP) 특성상 상업적 가치가 없는 발송물로 범주에 포함되는 예시로 공인 밀봉 된 외교행낭을 들 수 있음
  - 운반저장 매체<sup>149)</sup>에 기록된 서신 및 문서는 제외됨<sup>150)</sup>
- AECO는 비문서 발송물이 서신 및 문서와 혼합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하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시, AECO는 비문서 발송물이 올바르게 표시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함
  - 과세 품목이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모든 발송물은 서신 및 문서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며 동일한 것은 별도로 보관 및 통관되어야 함
    - 모든 서신 및 문서에 대한 상세한 e-CIFCM<sup>151)</sup>이 물품 신고서 역할을 하며<sup>152)</sup> 발송 전에 세관은 서신 및 문서로 분류된 발송물에 대해 비 침입 검사를 수행해야 함<sup>153)</sup>
    - 모든 서신 및 문서는 밀봉된 녹색 택배 봉투에 넣어야하며<sup>154)</sup> e-CIFCM에 포함

147) Customs Administrative Order(CAO) 05-2020 Article 3.6.

148) Customs Administrative Order(CAO) 05-2020 6.1.

149) 자기 테이프, 자기 디스크 및 광 디스크 등.

150) Customs Administrative Order(CAO) 05-2020 6.1.1.

151) 탁송인이 은행, forwarders 및 consolidators과 같이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탁송물의 마스터 항공 운송장에서 그룹화되거나 분할되어 최종 탁송인에게 위탁되는 모든 화물 운송장.

152) Customs Administrative Order(CAO) 05-2020 6.1.2.

153) Customs Administrative Order(CAO) 05-2020 6.1.3.

- 된 서신 및 문서는 제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통관됨<sup>155)</sup>
- 문서의 물리적 및 문서 검토 기준(예: 무게, 부피)을 결정할 때 위험 관리 기법을 사용함<sup>156)</sup>
- 최소금액(De Minimis Shipments)물품은 관세나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품이기에 때 문에<sup>157)</sup> 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특송물품으로 처리하기 위해 AECO는 FOB 또는 FCA 값이 1만필리핀페소(Php10,000.00) 이하인 모든 최소금액 발송물품에 대한 상세한 e-CIFCM을 세관에 제출해야 함<sup>158)</sup>
- 상세한 e-CIFCM은 모든 최소금액 물품의 신고의 역할도 하나 규제대상 물품은 각 HAWB를 별도로 신고해야 함<sup>159)</sup>
  - 세관 검사관은 AECO에서 제출한 e-CIFCM에 대한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물리적 검사를 위해 물품에 태그를 부착해야 하며 제한물품의 경우 관련 규제 기관의 승인 또는 허가 제출을 요구함<sup>160)</sup>
- 위험 기반 관리 기술의 적용에 따라 FOB 또는 FCA 가치가 1만필리핀페소 (Php10,000.00) 이상 5만필리핀페소(Php50,000.00) 미만 인 소액 과세대상 물품 의 경우 세관은 다음 조건에 따라 사전적하목록 제출이 가능함<sup>161)</sup>
- e-CIFCM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 처리, 관세 및 세금 계산, 서류 또는 물리적 검사 또는 둘 모두를 목적으로 물품 도착 전 다음 정보를 포함하여 당국에 제출되어야 함<sup>162)</sup>
    - 관세액, 부가가치세(VAT), 특송 통관 수수료, 기타(과징금, 과태료 등)

---

154) Customs Administrative Order(CAO) 05-2020 6.1.4.  
 155) Customs Administrative Order(CAO) 05-2020 6.1.5.  
 156) Customs Administrative Order(CAO) 05-2020 6.1.6.  
 157) Customs Administrative Order(CAO) 05-2020 6.2.  
 158) Customs Administrative Order(CAO) 05-2020 6.2.  
 159) Customs Administrative Order(CAO) 05-2020 6.2.1.  
 160) Customs Administrative Order(CAO) 05-2020 6.2.2.  
 161) Customs Administrative Order(CAO) 05-2020 6.3.  
 162) Customs Administrative Order(CAO) 05-2020 6.3.1.

- AECO는 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세관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포함된 간이 수입신고서 (simplified goods declaration)를 제출해야 함<sup>163)</sup>
- 은행의 보증 따라 해당 소액 과세대상 물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부과된<sup>164)</sup> 관세를 납부하기 전에 반출이 가능함
  - 반출되어야 특송물품에 대한 비공식적 반입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기재되어 처리 되어야 함(duly filed and processed)
  - 필요한 경우 당국에 의해 화물에 대한 서류 또는 물리적 검사가 완료되어야 하며 화물에 대한 관세, 세금 및 기타 요금 또한 당국에서 결정함
  - 부과될 총 관세, 세금 및 기타 비용이 AAB(Accredited Agent Bank)가 보증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물품만 반출이 허용됨
  - 반출이 필요한 물품은 Alerting Unit of the Bureau에서 발행한 경고 또는 보류 명령의 대상이 아니어야 함
  - AECO는 AECO가 지불하지 않은 모든 수입품에 부과된 관세를 비롯한 제세금 및 기타 비용을 요청 시 세관에 지불할 것을 보증하는 AAB의 공증된 서면 약정서를 지역 세관에 제출해야 함
- 세관은 분할 탁송물을 포함한 모든 특송물품의 사전 도착 여부와 통관 및 모니터링을 위해 간소화된 ICT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sup>165)</sup>
- 특히 최소금액 기준에 해당하는 특송물품은 해당 지원시스템에 따라 사전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 저가이거나 과세되는 5만필리핀페소(Php50,000.00) 미만인 특송 화물의 경우 AECO는 AAB에 500만필리핀페소(Php5,000,000.00) 이상의 금액을 예치하여 세관의 요구에 따라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세관은 보증금에서 관세, 세금 및 기타 요금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163) Customs Administrative Order(CAO) 05-2020 6.3.2.

164) Customs Administrative Order(CAO) 05-2020 6.3.3.

165) Customs Administrative Order(CAO) 05-2020 section 9

- 특송물품 중 잘못 발송된 물품은 다음의 경우 관세, 세금 및 기타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운송인에게 반환될 수 있음<sup>166)</sup>
  - 항공운송장(AWB)에는 수하인의 주소가 필리핀 이외의 것으로 표시되어 있음
  - AWB에는 수하인의 주소가 필리핀이라고 되어 있지만 라벨이나 표시에는 배송지가 필리핀이 아닌 것으로 나와 있고 국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한 경우
  - 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운송물이 잘못 분류되거나 잘못 배치되었다는 사실을 국에 통보함
  - 물품이 경고 명령 또는 부정적인 정보의 대상이 아니며, 비침해 검사를 수행할 때 규제, 제한 또는 금지물품이 아닌 것이어야 함
  
- 다음의 경우 특송 물품으로 간주할 수 없음<sup>167)</sup>
  - 필리핀 법률에 따른 금지 및/또는 제한 물품
  - 위험물 및/또는 폭발물 및 기타 유해 화학물질
  - 보석, 예술 작품 등과 같은 귀중한 물품
  - 동물, 어류 및 가금류(생선 또는 냉동)
  - 식품 및 부패하기 쉬운 물질
  - 유해 또는 사체
  - 화폐(코인, 현금, 지폐 및 현금에 상당하는 양도성 금융상품)
  
- 다음의 경우 특송물품으로 즉시 반출 될 수 없음<sup>168)</sup>
  - ‘without commercial value’, ‘no commercial value’, ‘for customs purposes’의 문구가 기재된 수입 신고 물품은 특송으로 즉시반출 될 수 없음
  - 따라서 발송인, 수입인, 수취인, AECO는 WCO 세관에 의한 특송물 즉시 발송 지침의 범주 1에 따라 분류된 서신 및 문서를 제외하고 사용 가능한 송장, 영수증 또는 동등한 문서에 상품의 특정 가치를 신고해야 함

166) Customs Administrative Order(CAO) 05-2020 section 10.

167) Customs Administrative Order(CAO) 05-2020 section 15.

168) Customs Administrative Order(CAO) 05-2020 section 14.

- 개인적인 용도와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한도 내에 있지 않는 한 관련 규제 기관이 부과하는 요건 또는 조건의 대상이 되는 상품
  - 최소금액에 해당하는 물품 중 규제 물품은 관련 기관의 요구조건을 만족해야 하나 개인용 물품이거나 당국의 물량 제한을 받고 있는 물품의 경우 당국의 결정으로 즉시반출이 어려움
- 조건부 면세, 보세공장용 또는 환적 또는 자유무역지역에 조건적 반입을 위해 수입 되는 물품

## 5. 인도네시아

### 가. 개요

#### 1) 담당기관

- 인도네시아 관세청의 명칭은 관세·소비세 총국(Direktorat Jenderal Bea Cukai, Directorate General of Customs and Excise)으로 재무부 산하 기관임<sup>169)</sup>
  - 인도네시아 관세청은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를 시작으로 1946년 관세·소비세 본부 (Pejabatn Bea dan Cukai)로 출범하여 1948년 관세·소비세국으로 명칭이 변경 되었다가 196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관세·소비세 총국으로 유지되고 있음
-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 총국의 주요 임무는 무역·산업 보호, 밀수 및 불법거래로부터 국경보호, 관세 및 소비세 수입 징수의 최적화임<sup>170)</sup>
  - 관세 및 소비세 축진의 적절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성장을 촉진함

169) 관세·소비세 총국 홈페이지, <https://www.beacukai.go.id/>, 검색일자: 2023. 8. 7.

170) 관세·소비세 총국 홈페이지, <https://www.beacukai.go.id/arsip/abt/vision-mission-and-strategy.html>, 검색일자: 2023. 8. 7.

- 관세 및 소비세 절차의 단순화와 강력한 위험 관리의 구현을 통해 수출입 물류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유익한 비즈니스 및 투자 환경을 조성함
  - 현행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부정적이고 위험한 영향을 미치는 금지 및 제한 상품의 수입 및 수출을 통제 및/또는 방지하여 사회, 국내 산업 및 국익을 보호함
  - 강력한 위험 관리 시스템, 철저한 정보 및 조사, 강력한 집행, 정확한 관세 및 소비세 감사의 구현을 통해 수입, 수출 및 기타 관세 및 소비세 활동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통제함
  - 정의와 균형의 의미에서 평등의 공정성 원칙을 고려하는 소비세 수단을 통해 건강, 환경, 공공질서 및 보안에 해로울 수 있는 특수한 특성과 특성을 가진 특정 상품의 생산, 유통 및 소비를 제한, 통제 및/또는 규제함
  - 국가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 관세, 수출 관세 및 소비세로 인한 정부 수입 최적화함
- 관세·소비세 총국의 조직과 역할은 대통령령에 의해 규정하며 총국을 구성하는 각 부서의 역할은 재무부 규정 및 법률에 따라 관세 및 소비세 분야의 기술 정책을 수립함<sup>171)</sup>
- 장관이 정한 정책에 따라 현행 정부 규정 및 법률에 따라 관세 영역에 들어오고 나가는 물품의 운송 통제와 관련된 정부 정책의 기술적 운영을 계획, 구현, 통제, 평가 및 확보함
  - 계획, 개발 및 서비스, 허가, 시설, 절차 및 현행 정부 규정 및 법률에 따라 관세 및 소비세 분야의 감독함
- 관세·소비세 총국은 총국장 하에 8개 업무국과 사무국 및 자문관실로 설치·운영되고 있음
- 총국장은 현행 정부 규정 및 법률에 따라 수입 관세 및 소비세 부과 분야의 기술

171) 「재무부령」 No.234/PMK.01/2015, <https://www.beacukai.go.id/arsip/abt/main-task-and-function.html>, 검색일자: 2023. 8.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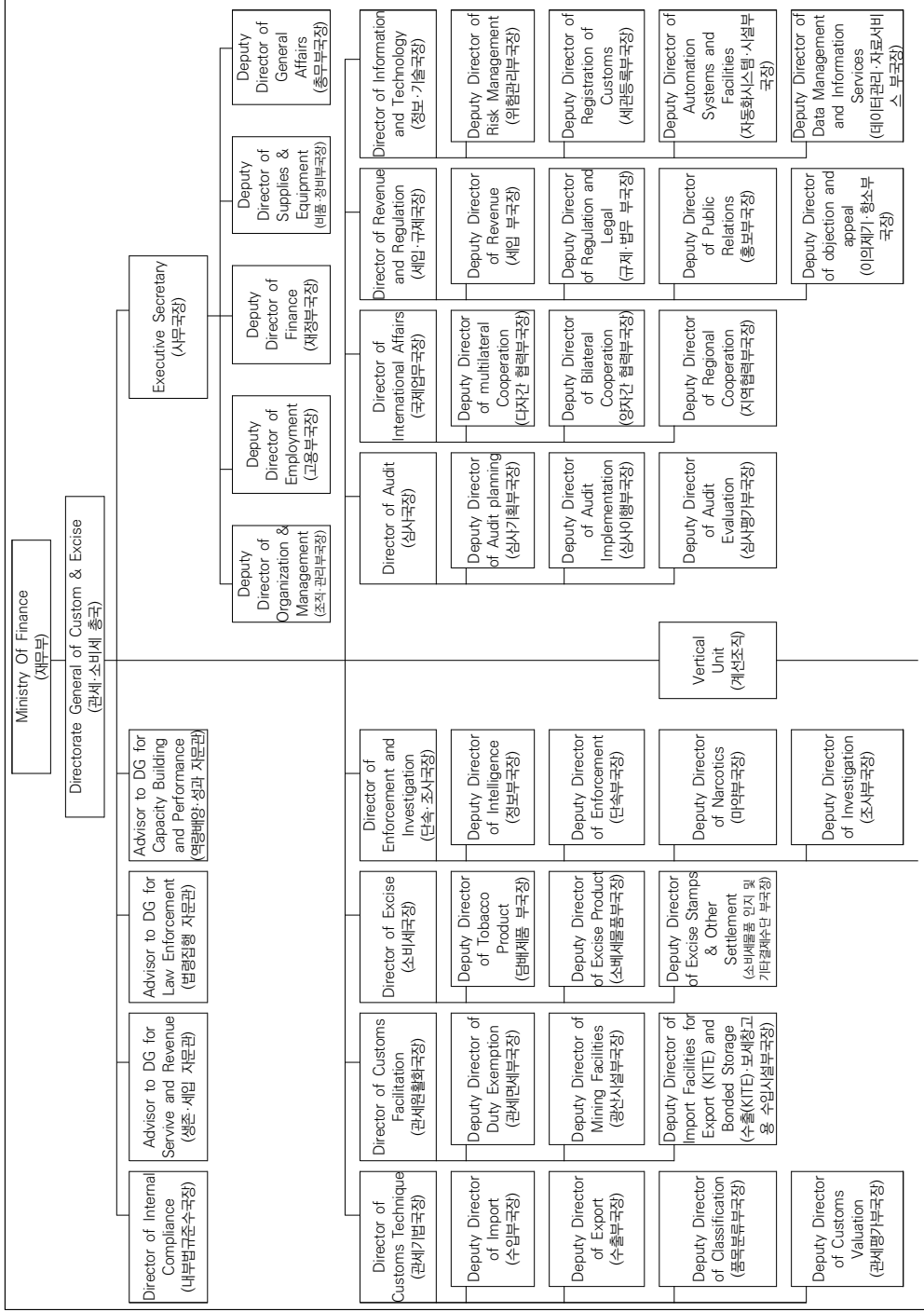
운영을 계획, 구현, 통제, 평가 및 확보함

- 8개국은 관세기법국, 관세원활화국, 소비세국, 단속조사국, 심사국, 국제업무국, 세입규제국, 정보·기술국임
- 관세원활화국은 관세원활화 분야의 정책 수립 및 이행, 규범·표준·절차·기준의 마련, 기술 지침 제공, 정책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소비세국은 소비세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함<sup>172)</sup>
  - 소비세 분야의 정책 수립 및 이행, 규범·표준·절차·기준의 마련, 기술 지침 제공, 정책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함
  - 관세 및 소비세 분야의 시설 및 라이선스 서비스
  - 수입, 수출 및 소비세 서류 통지 심사
  - 물품검사 및 계수, 신체검사 및 탐지수단의 운용
  - 상품 분류, 수입관세율, 수출관세율, 관세 가격 및 수입 편의에 대한 통지를 조사하고 수입 및 기타 상황에서 수입관세, 수출관세, 소비세, 세금 계산의 정확성에 대한 연구 DGCE가 징수하는 법률 및 규정에 따른 국가 부과금, 상품 분류, 수입 관세율, 수출 관세율 및 관세 가격 결정
  - 관세 지역에서 수입품 반출에 대한 서비스 및 감독
  - 보세창고 및 보세창고에서의 물품 반출입 감독
  - 수출 물품의 운송 수단 반입, 비축 및 선적에 대한 서비스 및 감독
  - 소비세 서류 장부 업무의 집행
  - 근절 및 소비세 인지 교환 업무의 집행
  - 소비세 물품 사업자, 등기부 및 소비세 물품 관련 서류에 대한 조사
  - 소비세 대상 물품의 생산, 가격 및 수준에 대한 감독 및 모니터링 실시
  - 관세 보관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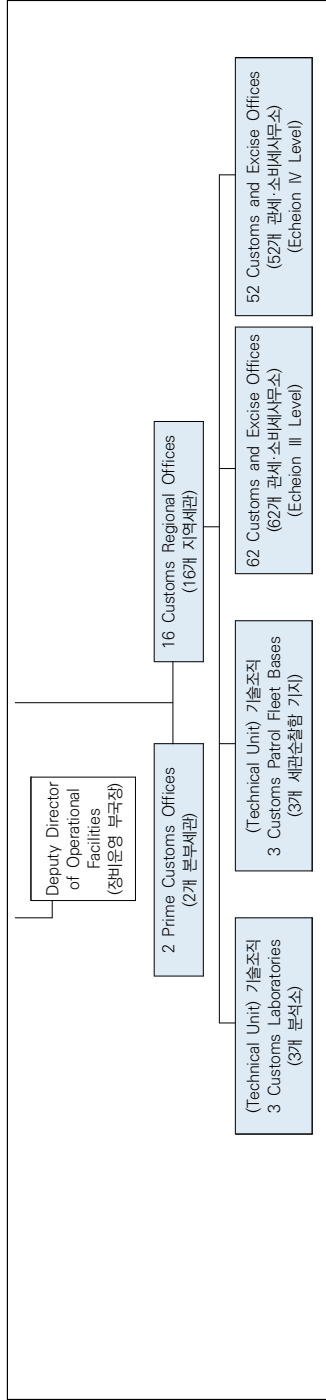
172) 현재 소비세국을 제외한 부서에 대한 자료 없음. 소비세국 관련 자료는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bclampung.beacukai.go.id/tentang/tusi/tusi-pkc/>, 검색일자: 2023. 8. 8.

- 보세창고 및 관세창고에서의 물품 보관, 반입 및 반출 관리
- 비통제물품, 국가통제물품 및 국가소유물품의 정산사항의 집행
- 비통제신고물품, 국가통제물품, 국가소유물품에 대한 경매 준비
- 통제 불능으로 선언된 물품, 국가가 통제하는 물품, 국가에 속하거나 부패한 물품을 파기하는 행위 관리

[그림 III -7] 인도네시아 관세·서비스세 총국 조직도



[그림 III -7]의 계속



자료: 관세·소비세총국 홈페이지, <https://www.beacukai.go.id/arsip/abt/struktur-organisasi.html>, 검색일자: 2023. 8. 8.

## 2) 관련법령<sup>173)</sup>

- 「관세법」은 관세영역의 모든 물품 이동과 관세 징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sup>174)</sup>
  - 동법은 수입, 물품운송, 세율 및 과세가격의 결정, 품목분류, 수입관세의 미징수, 면제, 감면 및 환급, 수입관세의 납부, 청구 및 담보,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수출입 금지 및 수출입 제한, 이의 및 항소, 처벌 등에 대해 규정함
  
- 「관세법」상 탁송품(barang kiriman)은 우편분야의 법적 규정에 따라 우편서비스 운영자를 통해 발송되는 물품으로 전자상거래 물품, 우편물, 전자상거래 플랫폼 외의 거래방식으로 배송되는 택배, 소포 등이 해당되며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음<sup>175)</sup>
  - 「관세법」 제8조(4)항 우편 또는 탁송으로 발송된 수입물품은 관세소비세공무원의 승인이 있어야만 반출될 수 있음
  - 「관세법」 제10조(2)항 세관신고는 승객, 승무원, 국경통과자의 개인 물품 및 일정 과세가격 그리고/또는 금액 한도 내의 탁송품에 대하여는 필요하지 아니함
  - 「관세법」 제13조(1)(b)항은 승객, 승무원, 국경통과자가 반입하는 수입물품 또는 우편 또는 탁송품에 별도의 기준으로 수입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규정함
  - 「관세법」 제25조(n)항은 승객, 승무원, 국경 통과자의 개인 물품 및 과세가격 그리고/또는 일정 금액까지의 탁송품에 대해 수입관세가 면제됨을 규정함
  - 「관세법」 제63조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의 반출 중지 규정은 승객, 승무원, 국경통과자의 개인 물품 또는 상업적 목적이 아닌 우편 또는 탁송화물로 발송된 탁송품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규정함

173) 본 보고서에서 「재무부령」 No.199/PMK.010/2019(2019년 제199호)에서 발췌한 번역본(영문/한글)이 없는 관계로 인도네시아어 원문을 활용하여 참조 편의를 위해 작성하였으나, 법적 효력은 다음 링크에서 보는 인도네시아어 관련 규정에 있음. <https://jdih.kemenkeu.go.id/fullText/2019/199~PMK.010~2019Per.pdf>, 검색일자: 2023. 8. 8.

174) 「관세법」 UU 10/1995 Kepabeanan(관세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1995년 제10호)

175) 「관세법」 UU 10/1995 Kepabeanan(관세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1995년 제10호)

## 나. 소액면세

- 2020년 1월부터 개정을 통해 탁송화물 면세한도가 75달러에서 3달러로 대폭 하향 조정됨<sup>176)</sup>
  - 역대 최대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던 2018년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탁송화물 면세한도를 100달러에서 75달러로 하향 조정한 바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탁송화물 면세 한도를 2018년 100달러에서 75달러로 하향 조정했으며 2019년 12월 31일 재무부령 공표를 통해 2020년 1월 30일부터는 면세한도를 하루에 배송 물품 1건 당 75달러에서, 배송 건당 배송물품 가치 3달러 한도로 대폭 축소함<sup>177)</sup>
  
- 인도네시아 탁송화물 면세한도를 3달러 수준으로 정한 이유는 정책 조정 당시 탁송화물 운송장에 기재된 금액의 건당 평균치가 3.8달러였기 때문임
  
- 면세한도를 하향한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음
  - 국내외 배송 물품에 대한 동등한 조세제도 적용
  -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상품의 급격한 증가
  -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시장을 상대로 동일한 조세제도 적용
  - 현지 기업들의 의견 반영
  
- 탁송화물 금액 범위는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금액별 수입세율이 다름<sup>178)</sup>
  - 3달러 이하는 수입관세 면제, 선납법인세 면제,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됨
  - 3~1,500달러는 수입관세 7.5%,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며 선납법인세는 면제됨

176) 탁송품은 특송물품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특송물품 이외에 일반 탁송품(특송업체가 취급하지 않는 일반 개인화물의 경우)도 해당함.

177) 『Kotra 뉴스』, 「인도네시아, 탁송화물 면세 한도 3달러로 하향 조정」, 2020. 2. 7.,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90&pNttSn=180004](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90&pNttSn=180004), 검색일자: 2023. 8. 8.

178) 「재무부령」 No.199/PMK.010/2019(2019년 제199호)

- 1,500달러 이상은 일반수입관세(MFN)가 적용되며, 기타 세금은 세관이 결정하며, 상품수입통지서(PIB)를 제출해야 함

〈표 III-7〉 조건별 탁송화물 수입세율

(단위: %)

조건	수입관세	선납법인세	부가가치세	기타
(1) 탁송화물 금액 3달러 이하				
(2) 담배 : 쉐련 최대 40개비, 시가 최대 5개, 앞담배 최대 40그램 한도, 기타 담배 최대 40그램 한도((세분화) 날개 형태 20개, 캡슐 5개, 액체 30밀리리터, 카트리지 4개, 기타 50 그램(밀리리터))	0	0	10	-
(3) 주류 : 최대 350밀리리터의 경우				
3달러 초과 1,500달러 이하 가치 탁송화물	7.5	0	10	-
1,500달러 초과 탁송화물	MFN	세관 결정	세관 결정	PIB
가방(HS Code 4202)	15~20	7.5~10	10	-
섬유/의류 제품(HS Code 61, 62, 63)	15~25	7.5~10	10	-
신발류(HS Code 64)	25~30	7.5~10	10	-
서적(HS Code 4901, 4902, 4903, 4904)	0	0	0	-

자료: Kotra, 『인도네시아 무역·투자 FAQ』, 2020. 8., p. 40.

## 다. 특송물품의 통관절차

### 1) 일반 통관

- 인도네시아는 탁송물품을 금액기준과 물품에 따라 일반 화물과 동일한 수입 통관 절차를 적용하고 있음
  - 목록통관이 적용되는 3달러 이하(FOB)에 대해서만 수입관세가 면제되므로 대부분이 무관세 통관이 불가능하며 일반적인 수입통관 절차를 거침
- 인도네시아 수입통관 절차는 수입품의 인허가 사항확인 및 통관용 서류 구비 → 관세율 확인 → 수입신고서 작성 후 전송 → 세관의 Billing(수입제세 납부 통지서) 접수 후

수입 제세 납부 → 통관 결과 확인(무검사 통관 혹은 화물 검사, 서류심사 후 통관)  
→ 스토리지 관련 비용 납부 후 화물 반출 순서임<sup>179)</sup>

- 수입통관 시 수입업자는 국세청이 발행한 납세자번호(NPWP), API(수입자 인증번호), 세관등록부호(NIB)가 필요하며 수입신고는 세관전자시스템(SKP)을 통해 이루어짐
  - 수입은 물품 수입신고서(PIB) 데이터가 세관전자시스템(SKP)에 등록되면서 시작되며 추가 관세 및 내국세 납부서류(SSPCP)를 통해 국고은행에 수입관세 및 내국세를 납부함
    - PIB 모듈은 관세사 및 PIB 모듈을 신청한 수입업자만 소지할 수 있으며 상기PT. EDI Indonesia에서 제공함<sup>180)</sup>
    - NPWP 미소지시 적용세율 대비 100%가 추가 과세되며 외국 대사관 및 국제기관은 NPWP 소지가 불필요함
  - API는 「무역부 장관령」에 따라 무역부 또는 주정부 단위 무역부(일반 수입업자) 또는 투자청(생산업자가 수입하는 경우)이 발행한 아직 유효한 수입자 인증번호(API)를 소지해야 함<sup>181)</sup>
  
- 필수 서류는 원본 구비를 원칙으로 하며 보조서류는 통관 심사 중 세관 요청 시 제출하며 수입가액 심사와 관세율 적용의 주요 근거 자료로 활용됨
  - 구비서류는 송장, 포장 목록, 선하증권/항공운송장, 적하보험, 수입 관세 및 수입 관련 세금(SSPCP) 지불 영수증, FTA 원산지증명서, 위임장(통관업자가 제출한 경우) 등임<sup>182)</sup>
  - 보조서류는 판매계약서, 구매 주문서, 송금전표/은행거래내역서, 카탈로그/설명서 등임

179) KOTRA, 『2022 인도네시아 무역·투자 FAQ』, p. 19.

180) PT EDI 홈페이지, <https://edi-indonesia.co.id/id/>. 검색일자: 2023. 8. 8.

181) 「27/MDAG/PER/5/2012」, 「59/MDAG/PER/9/2012」.

182) 관세·소비세총국 홈페이지, <https://www.beacukai.go.id/arsip/pab/import.html>, 검색일자: 2023. 8. 9.

- 수입 품목에 따라 인허가 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대부분의 인허가 요건은 재무부령 또는 무역부령을 따름
  - 의약품, 식·음료품, IP, IT(수입쿼터), PI(각부처), SNI(국가표준), 선적 전 검사(선적항), 측정기계허가 등
  
- 인도네시아 관세청은 수입자의 위험도에 따라 Priority, Green, Red의 3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차등적인 수입 통관 절차를 적용함<sup>183)</sup>
  - Priority Channel은 관세청 평가에 의한 신용도 최상위 업체에 부여되는 등급으로 수입제세 납부 전에 무검사 통관이 가능함
    - 단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품목, 한시적 수입 화물, 재수입 화물, 정부에서 관리 품목으로 지정한 화물의 경우에는 화물 검사 후 반출됨
  - Green Channel은 수입제세 납부 후 통관 서류 및 화물 검사 없이 통관됨
  - Red Channel은 수입제세 납부 후 통관서류 및 화물 검사 완료 후 통관됨
    - 기존 Yellow Channel은 2022년 4월 22일 이후부터 폐지됨
  
- 심사 담당자(PFPD)는 현품검사 결과에 근거해서 품목 분류 및 관세율이 일치하는지 정확성을 심사하며 PIB상의 자진신고(self assessment) 내역과 현품검사 결과가 일치할 경우 수입물품 반출을 승인함
  - 서류심사 담당자가 관세율 및 과세가격을 PIB 신고금액보다 더 높게 정한 경우 해당 차액에 대해 추가 관세 및 내국세를 납부해야 하며 벌금 형태의 행정 처벌이 부과되며(과세가격 오류) 물품반출지시서 발행 전 반드시 완납해야 함
  
- 구체적으로 화물검사는 개봉하지 않는 상태에서 실시하는 X-ray와 내품을 전수검사하는 검사로 구분되며 선적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 적발 시 관세추징과 함께 행정 벌금이 부과됨
  - 물리적 검사는 전수 100% 검사, 전체 화물의 30% 검사, 전체 화물의 10% 검사,

183) 관세·소비세총국 홈페이지, <https://www.beacukai.go.id/arsip/pab/import.html>, 검색일자: 2023. 8. 9.

물품이 아닌 창고검사(우선 채널 수입업체) 등 4가지 유형이 있음<sup>184)</sup>

- 수입 및 수출이 금지된 물품은 다음과 같음<sup>185)</sup>
  - 반무슬림(Anti-Muslim) 물품
  - 공산국가(Communist) 물품
  - 칼(IATA 규정 및 세관 정책에서 승인된 것만 수입 가능)
  - 주류(허가 필요)
  - 귀금속(Precious metals, stones)
  - 담배 및 전자담배
  - 드라이아이스를 제외한 위험물
  - 모든 중고품

## 2) 특송 통관

- 특송화물 건당 3달러 이하는 면세통관되며 3달러 초과 1,500달러 이하(FOB가격 기준) 물품의 경우 화주의 선택에 의하여 일반 수입신고(PIB) 없이 특송업체가 신고하는 간이신고CN(Consignment Note)가 가능함<sup>186)</sup>
  - 건당 1,500달러를 초과되는 경우에는 일반 수입신고(PIB) 함
- 일반수입통관과 달리 간이통관은 세관등록번호(NIB)가 요구되지 않음
  - 일반수입통관은 납세자번호(NPWP), API(수입자 인증번호), 세관등록번호(NIB) 모두 필요함<sup>187)</sup>

184) 관세·소비세총국 홈페이지, <https://www.beacukai.go.id/arsip/pab/import.html>, 검색일자: 2023. 8. 9.

185) FEDEX, "Import Clearance Guidelines for FedEx Express Shipments to Indonesia," p. 6., <https://www.fedex.com/content/dam/fedex/apac-asia-pacific/downloads/fedex-import-clearance-guideline-en-id.pdf>, 검색일자: 2023. 8. 8.

186) FEDEX, "Import Clearance Guidelines for FedEx Express Shipments to Indonesia," p. 4., <https://www.fedex.com/content/dam/fedex/apac-asia-pacific/downloads/fedex-import-clearance-guideline-en-id.pdf>, 검색일자: 2023. 8. 8.

- 간이신고의 경우 물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7.5%의 단일 관세율이 적용되며, 수입물품에 대한 소득세 10%(Consignee가 NPWP가 없는 경우 20%)와 부가가치세 10% 등이 과세됨<sup>188)</sup>
- 특송 통관에 해당하는 탁송품이란 탁송업체 또는 인도네시아 우체국 이외에서 진행되는 항공운송을 통해 물품을 운반 후 하선장소(TPS)에 후속 프로세스를 위해 임시 장치해 두는 화물을 의미함<sup>189)</sup>
  - 주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Cross Border Trade)로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 해외 고객에게 B2C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함
- 탁송업체(Perusahaan Jasa Titipan, PJT)란 관계기관의 탁송허가를 득하였으며 세관장으로부터 통관활동 수행 허가를 득한 업체를 말함<sup>190)</sup>
- 탁송업체 지정요건 및 절차는 재무부령을 따르며 세관에서 특송업체로 승인된 업체만 특송화물을 처리할 수 있음<sup>191)</sup>
  - 특송업체 지정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총 6가지로 다음과 같음
    - 우편 서비스 허가
    - 통관 서비스 관리 회사로서의 통관 접근 및 활용 승인에 대한 증명서

187) FEDEX, "Import Clearance Guidelines for FedEx Express Shipments to Indonesia," p. 10., <https://www.fedex.com/content/dam/fedex/apac-asia-pacific/downloads/fedex-import-clearance-guideline-en-id.pdf>, 검색일자: 2023. 8. 8.

188) FEDEX, "Import Clearance Guidelines for FedEx Express Shipments to Indonesia," p. 3., <https://www.fedex.com/content/dam/fedex/apac-asia-pacific/downloads/fedex-import-clearance-guideline-en-id.pdf>, 검색일자: 2023. 8. 8.

189)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인니 공항세관 탁송품 수입통관 안내서, 2015. 3. 20.

190) 「재무부령」 No.199/PMK.010/2019(2019년 제199호) 제1조, 법령 p. 4에서 발췌함. 번역본(영문/한글)이 없는 관계로 인도네시아어 원문을 활용하여 참조 편의를 위해 작성하였으나, 법적 효력은 다음 링크에서 보는 인도네시아어 관련 규정에 있음. <https://jdih.kemenkeu.go.id/fullText/2019/199~PMK.010~2019Per.pdf>, 검색일자: 2023. 8. 9.

191) 「재무부령」 No.199/PMK.010/2019(2019년 제199호) 제27조~제30조, 법령 p. 10에서 발췌함. 번역본(영문/한글)이 없는 관계로 인도네시아어 원문을 활용하여 참조 편의를 위해 작성하였으나, 법적 효력은 다음 링크에서 보는 인도네시아어 관련 규정에 있음. <https://jdih.kemenkeu.go.id/fullText/2019/199~PMK.010~2019Per.pdf>, 검색일자: 2023. 8. 9.

- TPS 지정 증명서 또는 TPS 운영자와의 협력에 대한 협약서
  - TPS 내에 있는 모든 장비 목록(카메라, CCTV, 스캐너, 저울, 검사실 등)
  - TPS에서의 상품 이동 시스템 계획이 포함된 플로우차트(flow chart)
  - TPS 공간 구역에 대한 세부 사항을 포함한 레이아웃 등
  - 세관당국에 의해 PJT로 지정이 된 후에는 현금보증(jaminan tunai), 은행보증(jaminan bank) 또는 통관 비용에 대한 보험 등을 세관장에 제출해야 함
    - 해당 보증금의 결정은 세관장이 수입 관세, 소비세 등 수입 관련 세금의 추정치에 근거해 상기 서류 제출 이후 3일 이내에 결정됨
- 세관 외의 지역에 위치한 물류 사업자는 화물 목록의 형태의 신고서를 세관 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화물 목록에 등재된 탁송화물의 하적(unloading)이 허용되면 신고자는 등록번호를 수령함
- 수입된 탁송화물은 임시 저장구역(TPS)에 저장되며, 세관 승인 이후에만 인도네시아 영토로 반출이 허용됨<sup>192)</sup>
- 수입 탁송화물은 개인 사용, 임시 수입, 인도네시아 내 거주 고객 대상 발송, 보세 창고 저장, 재수출 등의 목적으로 TPS에서 주로 반출됨
  - 폐기 처분 승인이 난 탁송화물에 대해서는 임시 저장구역(TPS)에 적재 가능함
- 개인 사용 목적의 탁송화물의 경우, 서한 또는 서류의 형식을 갖춘 탁송화물 목록과 탁송화물이 배송업체에 의해 세관을 거쳐 반출이 됨<sup>193)</sup>
- 탁송화물의 금액이 1,50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 화물 운송장을 세관 당국에 제출하면 탁송화물이 반출될 수 있음
  - 만일 탁송화물의 금액이 1,500달러를 초과하고 수령자가 법인인 경우와 수입세 납부기한 연장과/또는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탁송화물의 경우, 임시수입의 경우, PIB (상품수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192) KOTRA, 『2022 인도네시아 무역·투자 FAQ』, p. 41.

193) KOTRA, 『2022 인도네시아 무역·투자 FAQ』, p. 41.

- 탁송화물이 보세 창고에 저장돼 있는 경우 이를 반출하기 위해서는 보세구역법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 반출해야 하며, 재수출 과정의 경우 하역에 대해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할 수 있음<sup>194)</sup>

---

194) KOTRA, 『2022 인도네시아 무역·투자 FAQ』, p. 41.

## IV. 국제비교 및 요약

- 각국의 관세당국은 관세법 또는 관세 관련 법에 따라 특송물품의 통관 및 소액물품의 면세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 우리나라는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액면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특송물품의 통관은 「관세법」,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운영하고 있음
  - 미국은 19 USC §1321 및 19 CFR §10.151~153에 따라 소액면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특송물품의 통관 역시 「연방법」과 「연방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음
  - 일본은 「관세정률법」 14조 18호에 따라 소액면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특송물품의 통관은 「관세법」, 「관세정률법」, 「관세법기본통달」에 따라 운영하고 있음
  - 호주는 「관세법」 제71조, 「관세율법」 Schedule 4에 따라 소액면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특송물품의 통관은 관세법 및 관세법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음
  - 필리핀은 CMTA 제423조, CAO 02-2016에 따라 소액면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특송물품의 통관은 CMTA, CAO 05-2020에 따라 운영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재무부령」 2019년 제199호에 따라 소액면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특송물품의 통관은 관세법, 재무부령, 무역부령에 따라 운영하고 있음
  
- 소액면세 기준 및 배제대상은 각국별로 상당히 큰 편차를 보였음<sup>195)</sup>
  - 우리나라는 150달러, 미국은 800달러, 일본은 1만엔(약 68달러), 호주는 1,000호주달러(약 648달러), 필리핀은 1만필리핀페소(약 176달러), 인도네시아는 3달러로 다양한 금액을 지정하고 있었음

---

195) 2023. 8. 30. 기준고시환율.

- 배제대상의 경우 국가별로 품목이 다양하였으나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조사국은 공통적으로 주류, 담배를 배제하고 있었고 일본 및 인도네시아의 경우 의류, 신발 등의 제품을 소액면세에서 배제하고 있었음
  
- 간이신고의 금액기준 또한 각국별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호주의 경우 간이 신고 금액 기준과 소액면세 기준이 동일하였음
- 간이신고 금액기준은 우리나라는 150달러 초과 2,000달러 이하, 미국은 800달러 초과 2,500달러 이하, 일본은 20만엔(약 1,370달러) 이하, 호주는 1,000호주달러(약 648달러) 이하, 필리핀은 1만필리핀페소(약 176달러) 이상 5만필리핀페소(약 882달러) 미만, 인도네시아는 3달러 초과 1,500달러 이하임

## 참고문헌

- 강연호, 『미 전자상거래 통관제도 변경 관련 동향』, 관세청, 2019.
- 김종덕·김율성, 「해외직구물품 급증에 따른 통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해사법연구』, 제31권 제1호, 2019, p. 16.
- 김충호, 「특송물품 통관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8권 제1호, 2017. 2. 28., pp. 5~6.
- 손영수, 『E-Commerce 무역통관 세미나』, 외교부, 2019.
- 송선욱, 「국제e-commerce 거래에 대한 세관의 효율적 관리 방안」, 『관세학회지』, 제19권 제2호, 2018, p. 16.
- 송선욱, 「WCO의 즉시반출 가이드 라인에 대한 고찰」, 『계간 관세사』, 2004년 봄호.
- 송선욱, 「미국 세관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관련 실험 프로젝트 분석과 시사점」, 『관세학회지』, 제23권 제2호, 2022.
- 송선욱,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특송물품 수입통관시스템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6권 제3호, 2004.
- 정다운·이재선·김미정, 『전자상거래 물품의 관세 과세상 쟁점사항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p. 58.
- 정재호, 마정화, 정경화, 『주요국의 통관제도 및 개정교토협약 유보조항 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9.
- 정재완, 「인터넷으로 구매한 소액 물품 등의 면세」, 『관세와 무역』, 2006년 4월호.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22 수출기업 맞춤형 조사』, 2022, p. 42.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ATI, 2020 농식품 수출국가정보 필리핀, 2020, p. 164.

- ABF, Australian Customs Notice No. 2021/01 (Definition of ‘consignment’ for the purposes of section 68 of the Customs Act 1901), 2020. 12. 20.
- ABF, “Documentary Import Declaration Comprehensive Guide,” 2013. 7.
- ABF, SELF-ASSESSED CLEARANCE (SAC) DECLARATIONS, 2015. 2.
- Australian Customs Service, 「16.3 LODGING EXPRESS IMPORT DECLARATIONS (N10)」, 2007. 2. 27.
- CBP, “E-Commerce and Section 321 Shipments Overview,” 2020. 8. 13.
- CBP, “E-Commerce Strategy,” 2018. 2.
- CBP,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and Financial Reports,” 2023. 6.
- FEDEX, “Import Clearance Guidelines for FedEx Express Shipments to Indonesia,” 2021. 6. 10.
- KOTRA, 『2022 인도네시아 무역·투자 FAQ』.
- WCO, “Guidelines for the Immediate Release of Consignments by Customs,” 2018.

「관세법」.

「관세법」 UU 10/1995 Kepabeanan(관세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1995년 제 10호).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재무부령」 No.234/PMK.01/2015, 「재무부령」 No.199/PMK.010/2019(2019년 제 199호).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Customs Modernization and Tariff Act」,  
 Customs Administrative Order(CAO) 02-2016,  
 Customs Administrative Order(CAO) 05-2020.

관세청, <https://www.customs.go.kr>.

관세·소비세 총국 홈페이지, <https://www.beacukai.go.id/>.

미연방정부 홈페이지, <https://www.ecfr.gov>.

일본 관세국 홈페이지, <https://www.customs.go.jp/>.

CBP 홈페이지, <https://www.cbp.gov>.

Cornell 대학교 법령정보연구소 홈페이지, <https://www.law.cornell.edu>.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

GeTS Asia Pte. 홈페이지, <https://globletrade.services>.

PT EDI 홈페이지, <https://edi-indonesia.co.id/id/>.

인천공항본부세관, [https://www.customs.go.kr/incheon\\_airport/cm/cntnts/cntntsView.do?mi=12714&cntntsId=6920](https://www.customs.go.kr/incheon_airport/cm/cntnts/cntntsView.do?mi=12714&cntntsId=6920), 검색일자: 2023. 8. 28.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https://overseas.mofa.go.kr/ph-ko>, 검색일자: 2023. 8. 23.

필리핀 관세청, <https://customs.gov.ph/mission-and-vision/>, 검색일자: 2023. 7. 26.

『세정일보』, 「‘해외 직구’, 2014년 또다시 사상 최대 규모…1553만 건」, 2015. 1. 23.,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8>, 검색일자: 2023. 8. 21.

『어패럴뉴스』, 「美 의회, ‘De minimis(미소기준)’ 악용 막는 수입 규제법 발의」, 2022. 1. 26., [http://m.apparelnews.co.kr/news/news\\_view/?idx=195332](http://m.apparelnews.co.kr/news/news_view/?idx=195332), 검색일자: 2023. 7. 21.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월별납부 제도 이용한 수입기업의 비용절감 노하우」, 2022. 10. 24., [http://m.taxnet.co.kr/tax/news/news\\_View.asp?num=1039830&curPage=835&pSize=10&strSearchWord=%C1%A6%B8%F1%C0%BB%20%C0%D4%B7%C2%C7%CF%BC%BC%BF%E4](http://m.taxnet.co.kr/tax/news/news_View.asp?num=1039830&curPage=835&pSize=10&strSearchWord=%C1%A6%B8%F1%C0%BB%20%C0%D4%B7%C2%C7%CF%BC%BC%BF%E4), 검색일자: 2023. 8. 8.

『K글로벌타임즈』, 「수출 신고 관련 간소화의 필요성」, 2020. 9. 30., <https://www.kglob>

- altimes.com/news/curationView.html?idxno=22645, 검색일자: 2023. 7. 21.
- 『Kotra 뉴스』, 「인도네시아, 탁송화물 면세 한도 3달러로 하향 조정」, 2020. 2. 7.,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90&pNttSn=180004](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90&pNttSn=180004), 검색일자: 2023. 8. 8.
- Avalara, “What importers need to know about Entry Type 86,” June 29, 2020,  
<https://www.avalara.com/blog/en/north-america/2020/06/what-importers-need-to-know-about-entry-type-86.html>, 검색일자: 2023. 7. 21.
- VOA 뉴스, “Packages From China Are Surging Into US: Some Say \$800 Duty-Free Limit Was Mistake,” June 25, 2023, <https://www.voanews.com/a/packages-from-china-are-surging-into-us-some-say-800-duty-free-limit-was-mistake/7152380.html>, 검색일자: 2023. 7. 21.
- Customs By-law No.2300079, <https://www.abf.gov.au/help-and-support-subsite/CustomsNotices/2023-13.pdf>, 검색일자: 2023. 8. 14.
- DAFF, <https://www.agriculture.gov.au/biosecurity-trade/import/before/self-assessed-clearance-cargo#daff-page-main>, 검색일자: 2023. 6. 26.
- Homaffairs, <https://www.homeaffairs.gov.au/about-us-subsite/files/immigration-history.pdf>, 검색일자: 2023. 6. 26.
- SAC Thesaurus, <https://www.abf.gov.au/imports/files/fact-sheets/self-assessed-clearance-declaration-thesaurus.pdf>, 검색일자: 2023. 7. 3.

관세연구 23-01  
주요국의 특송물품 통관제도 비교연구

---

발 행 2023년 9월 27일  
저 자 최인혁 · 노영예 · 박지우  
발 행 인 김재진  
발 행 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 판 및 (주)세일포커스  
인 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ISBN 979-11-6655-232-8

---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관세연구 23-01

# 주요국의 특송물품 통관제도 비교연구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 044.414.2114 www.kipf.re.kr



9 791166 552328 93320  
ISBN 979-11-6655-232-8